지역법제 연구 14-16-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이 상 모 · 노 영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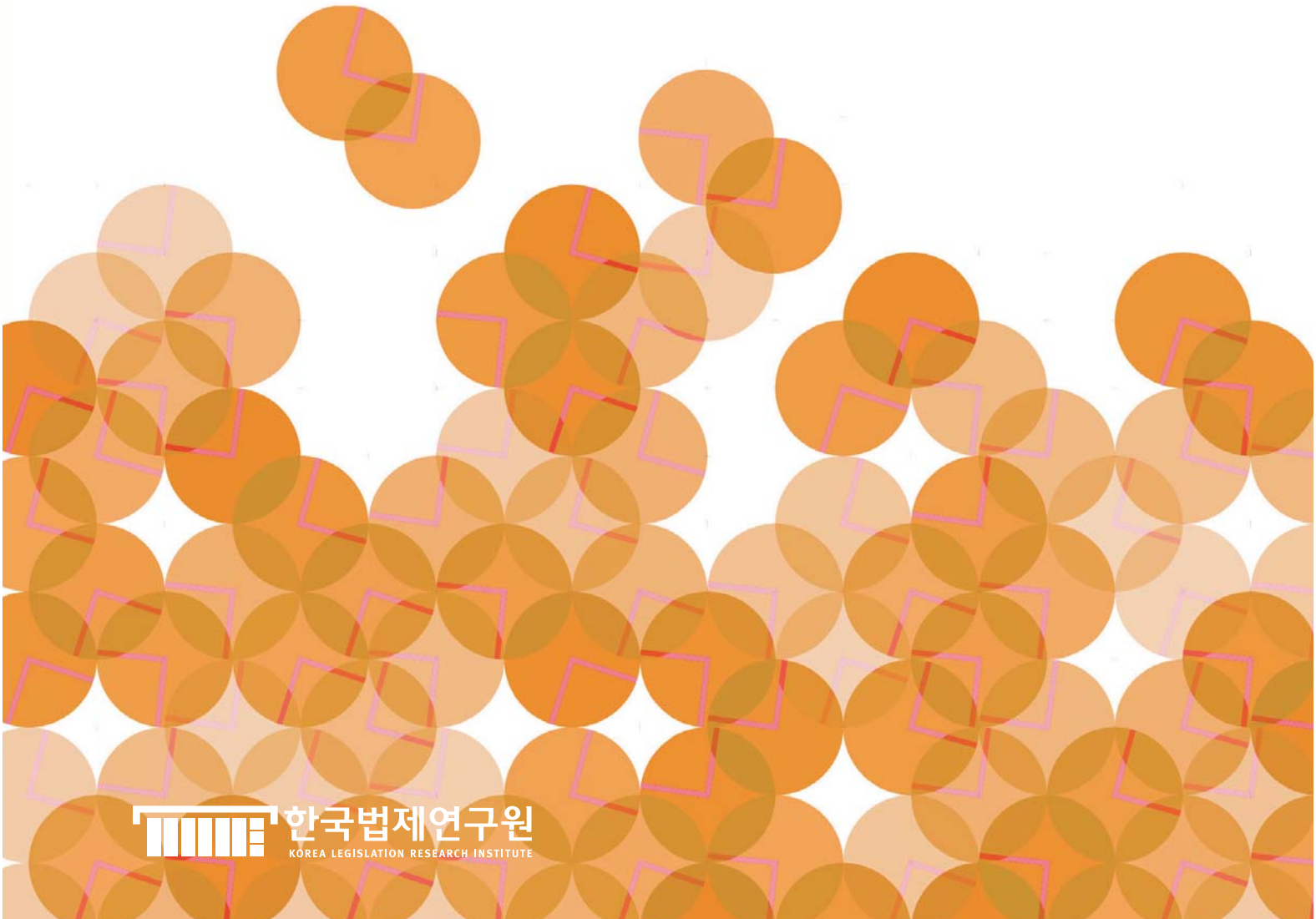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역법제 연구 14-16-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이 상 모·노 영 돈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relevant legislation of Russia on implementing Eurasia initiative)

연구자 :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Lee, Sang-Mo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Loh, Yeong-Don

2014. 11. 1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1990년 한·러시아가 수교 20년 이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고, 최근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진행과 함께 러시아와의 공동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법적 제도적인 변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

□ 연구목적

○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 내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 러시아 정책수립 및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러시아 법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 러시아의 법학에 있어 국가와 법이론의 발달이라는 학문적

으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와 법의 상호관계와 작용에 착안하여 법의 의미와 역할, 기능을 연구하는 것임

□ 현대 러시아 법제의 발전과정과 연원

○ 러시아 법제는 소련이 붕괴되고 개혁정책이 시작된 1990년 이후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현행 러시아 법제에 있어 각 연원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즉 중앙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헌법, 헌법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연방 헌법성 법률, 러시아연방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연방법률, 연방대통령 명령,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정부기관 명령 등이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법과 헌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지방하위법령, 지방자치기관의 법률 등이 있음

□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 러시아의 주요한 입법기관으로 연방의회와 국가두마가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일반관할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그리고 러시아 사법제도상의 특수한 형태인 중재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최고중재법원이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 러시아로의 진입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외국투자법과 경제특구법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업조직 절차법과 지하자원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원법이 있음

Ⅲ. 기대 및 효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의 이해를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 제공

□ 대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한 관련 법률 제공을 통하여 사전 분쟁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주제어 : 국가와 법이론, 러시아법 연원, 러시아 입법기관, 러시아 사법기관, 국가두마, 헌법법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greate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 and Korea. Russia holds promising investment potential. It contains comparatively high competitiveness with its abundant capital resources, and natural resources. Thus, Russia is certainly high potential partner. Moreover, there is a discussion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Far East and implementing of the Eurasia Initiative in collaboration with Russia. In light of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r various legislations surrounding Russia.

□ Purpose

○ After nearly 20 years of negotiations, Russia has finally joined the rank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2012. This membership will bring internal structural changes to the country. It is important to conduct compare and analy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ussia. From this standpoint, this study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and basic legal reference materials for those Korean companies wish to penetrate into Russian market.

Ⅱ. Major Contents

□ Basis for understanding Russia's Legislation

○ The Russian legislation, based upon a combination of Russian tradition, and legal theory. Thus, the Russian legislation ought to be reviewed in light of both Russian Tradition and Legal theory.

□ Contemporary Russia's Legislation Development and Origin

○ The break up o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brought changes to Russia's legislation after 1990's.

○ Russia's legislative body can be divided into central and regional. Central include the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 the Russian legislation regarding Federation Constitution amendment, the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treaty and International Agreement, Con-federation law, Federation President Order, the Russian Federation Government Order, Government Agencies Order. On a regional level, it include Russia Federation principal composition constitution, regional ordinance, regional autonomy agencies ordinance.

□ Russia's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 The Federal Assembly consists of two houses, the member State Duma also known as the lower house, and the Federation Council, also known as the upper house.

○ The Judiciary of Russia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the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al Court, Russian Federation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inal court in charge of disputes in Russia).

□ Major legislation regarding Eurasia Initiative

○ There are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and special economic zone law with respect to investment. Also, commercial organization process law, mineral resources law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 There are civil suit law and Court of arbitration for resolving disputes

Ⅲ. Expected Effects

□ To provide fundamental legislative reference information for Government policy aimed at execution of Eurasia Initiative

□ To provide enterprises wishing to penetrate into Russian market with relevant legislation in Russia in order to prevent and prepare ahead for possible dispute resolution

Key Words : Russian's State and Legal theory, Origin of Russian Law, Russia's Legislative Branch, Russia's Judicial Branch, State Duma, Court of Russian Federation, Eurasia Initiative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 17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18

제 2 장 러시아법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 21

제 1 절 국가와 법이론의 의미와 역할 ····· 21

제 2 절 사회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 23

제 3 절 법학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 26

제 4 절 법과 국가간의 상호간 영향과 보증작용 ····· 30

제 3 장 현대러시아 법제의 발전과정과 연원의 위계질서 ··· 35

제 1 절 현대 러시아법제의 발전과정 ····· 35

1. 1991년 소련 붕괴 이전 ····· 35

2.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 37

제 2 절 현대 러시아법 연원의 유형 ····· 40

1. 법률관습 ····· 40

2. 법률판례 ····· 41

3. 계 약 ····· 41

4. 법률과 명령 ····· 42

제 3 절 연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 43
1. 러시아연방 헌법 ····· 44
2.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 47
3. 연방 헌법성 법률 ····· 48
4. 러시아연방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 49
5. 연방법률 ····· 49
6. 연방대통령 명령 ····· 52
7.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 53
8. 정부기관 명령 ····· 53

제 4 절 지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 54
1.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법과 헌규 ····· 55
2.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 55
3. 지방하위법령 ····· 56
4. 지방자치기관의 법률 ····· 56

제 4 장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 57
제 1 절 연방의회 ····· 57
1. 구성과 특징 ····· 57
2. 회의제도 ····· 62
3. 권한과 의무 ····· 62

제 2 절 국가두마 ····· 66
1. 구성과 특징 ····· 66
2. 회의제도 ····· 69

제 3 절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 70
1. 구 성 ····· 71

2. 권 한 ····· 72
3. 심리원칙 ····· 74
4. 심리절차 ····· 75

제 4 절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최고중재법원 ····· 76
1.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 76
2.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 78

제 5 절 주요 입법절차 ····· 80

제 5 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 83
제 1 절 외국투자법의 주요내용 ····· 83
1. 목 적 ····· 84
2. 적용범위 ····· 84
3. 외국투자자의 보호 ····· 84
4.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설립과 철수 ····· 88
5. 외국법인 지점의 설립과 철수 ····· 88

제 2 절 경제특구법의 주요내용 ····· 89
1. 경제특구의 유형 ····· 89
2. 경제특구의 설립요건 ····· 89
3. 경제특구의 설립 ····· 90
4. 경제특구내의 토지 양도 및 사용 절차 ····· 92
5. 경제특구의 관세제도 ····· 92

제 3 절 상업조직절차법의 주요내용 ····· 93
1. 입법목적 ····· 94
2. 상업조직이 통제된 기준 ····· 96

3. 거래의 사전허가 ····· 97
4.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 98
5. 사전허가 절차 ····· 99

제 4 절 지하자원법의 주요내용 ····· 101
1. 목 적 ····· 102
2. 총 칙 ····· 102
3. 지하자원의 이용 ····· 104
4.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 107
5. 지하자원 이용의 국가적 통제 및 조정 ····· 109
6. 지하자원 이용 및 납부 ····· 110
7.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지하자원이용 관련 분쟁의 해결 ····· 110

제 5 절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 110
1. 총 칙 ····· 110
2. 법원의 구성 ····· 112
3. 관 할 ····· 113
4. 소송의 당사자 ····· 115
5. 소송의 제기 ····· 116
6. 청구의 확보 ····· 117
7. 소송 진행의 준비 ····· 117
8. 법원의 심리 ····· 118
9. 법원의 판결 ····· 119
10. 법원 판결의 이행 ····· 119
11. 소송 심리의 중단 ····· 119
12. 소송 심리의 종료 ····· 120
13. 항소와 항소심의 심리 ····· 120

14. 상고심에서의 소송의 진행 ····· 122
15. 감독법원에서의 소송의 진행 ····· 122

제 6 절 중재법원법의 주요내용 ····· 123
1. 총 칙 ····· 123
2. 중재법원의 설립 ····· 123
3. 중재법원에의 분쟁제기 ····· 124
4. 중재법원의 구성 ····· 125
5. 중재심리 ····· 125
6. 중재법원의 결정 ····· 126
7. 중재법원 결정에 관한 항고 ····· 127
8. 중재법원 결정의 이행 ····· 128

제 6 장 결 론 ····· 131

참 고 문 헌 ····· 13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인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 대상국으로서, 10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12번째 수입 대상국이며, 대 유럽 지역의 교역에 한정하면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독일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1] 최근 들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및 중국 등과 함께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한 국가로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양자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BEPA) 체결을 위하여 2005년부터 협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인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러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3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 대한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의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초석을 닦자'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2]을 말한다.

---

1) 한국무역협회의 2013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대 러시아 무역 수출은 111.5억불, 수입 115.0억불이고, 유럽지역에서 있어서는 수출은 1위(2위 독일), 수입은 2위(1위 독일 193.3억불)이다.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kts#none

2) 네이버 지식백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618&cid=520&categoryId=520

이러한 급증하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러시아 법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학이 우리나라의 법제개선의 관점에서 소위 법제선진국에 대한 연구에 치중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러시아는 201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가입 신청을 한지 18년 만에 154번째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3] 최근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상대국중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법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에 맞추어 각종 법적 및 제도적인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법제도적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각종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서, 대 러시아 정책수립 및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할 주요 법적 내용의 분석에 앞서, 러시아법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러시아의 법학(юридическая наука) 연구에 있어서 법이나 국가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 '국가와 법(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또는 '법과 국가(право и государство)'라고 하여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앙일보] 러시아 WTO 가입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916839&cloc=olink|article|default

이어 러시아의 기본적인 연원과 주요 입법 및 사법기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구 소련 시절부터 1992년 이후의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변천된 러시아법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러시아 법의 주요한 특징 및 현행 러시아법의 연원과 연원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러시아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기관과 실제 운용되고 있는 입법절차를 살펴보고, 러시아법의 적용과정인 사법기관과 사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후에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의 필요가 예상되는 러시아와 관련된 주요 법제를 살펴본다. 다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이 있지만,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가 되어 있는 법률들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로의 진입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외국투자법과 경제특구법을 선정하였고, 이와 부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업조직절차법과 지하자원법을 검토한다. 또한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원법의 분석을 통하여 러시아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처럼 대 러시아 진출시 예상되는 실체법적 법률과 절차법적 법률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 2 장 러시아법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제 1 절 국가와 법이론의 의미와 역할

러시아법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는 법학(юридическая наука)의 연구에 있어서 법이나 국가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 '국가와 법(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또는 '법과 국가(право и государство)'라고 하여 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서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4] 이러한 러시아의 법학에 대한 독특한 접근은 러시아법제의 특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러시아법학에서 '국가와 법이론(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본다.[5]

국가와 법이론은 기본 법률과학으로써, 국가와 법의 계속적인 관계로 인해서 생긴 발전, 설립과 기능, 공통적 법칙과 경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며, 국가와 법 관계의 본질, 그리고 모든 법률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개념과 분류, 기본 법률과학을 상용하는 국가와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지식만을 연구대상으로 보지 않고, 현재까지 개발된 국가와 법의 지식을 제한없이 폭넓게 활용하여 연구한다.

---

4) 간혹 '국가이론(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또는 '법이론(теория права)'이라고 하여 분리하여 말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국가이론은 국가의 기원, 유형, 형태, 요소, 구조, 기능, 전망 등과 같은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연구하고, 또 법이론은 주로 법의 연원, 법규범의 종류, 법과 법적용, 법기술, 법규범의 충돌, 법규범의 해석,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법학이론을 연구한다. О. Е. Кутафина, ОСНОВН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Москва: ЮРИСТ), 1995, с. 5-11 참조.

5) 러시아에는 국가와 법이론에 대한 저작이 매우 많다. 그 중에서 Комаров는 그의 저서에 국가와 법이론을 도식화한 표로 요약·설명하는 것이 특이하다. С. А. КОМАРОВ, ОБЩАЯ 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В СХЕМАХ И ОПРЕДЕЛЕНИЯХ, (Москва: Манускрипт), 1996, с. 1-48.

국가와 법이론은 러시아의 매우 독특한 과학이다. 국가와 법이론은 국가와 법에 대해서 동시에 연구하는 과학이 아니다. 즉 국가이론은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예컨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학설, 즉 국가의 탄생, 종류, 형태, 구조와 국가의 기능 및 국가 전망에 대해서 연구한다. 마찬가지로 법이론은 법률상의 교리론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예컨대 법의 근거, 합법규범의 종류, 입법 및 법집행, 법률기술, 합법규범의 충돌, 법의 해설, 법률 책임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다. 그러나 국가와 법이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와 작용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분야라 하겠다.

러시아의 법과대학에서 국가와 법 과목은 필수적인 과목이지만, 국가와 법이론이 무엇인가는 관련 서적들에서 정해진 설명은 없다. 어떤 저자는 이 과학의 과목으로 탄생의 기본 법칙, 국가와 법의 발전과 기능, 탄생의 특수 법칙, 국가와 법의 각각의 계급에서 나타나는 발전과 기능(이 때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등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저자들은 법칙 과정을 거친 탄생과 여러 역사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계급사회의 활동에서 보이는 국가와 법의 발달, 국가와 법의 본질, 내용, 형태와 기능, 국가와 법의 상관성, 입법과 법집행 등을 설명하고 있다.[6]

---

6) Марченко는 국가와 법이론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용어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М. Н. Марченко, 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Москва: Зерцало), 2011, с. 516).
- 국가와 법의 탄생의 과정, 형성과 발전, 일반 법칙
- 국가와 법의 상관성
- 국가와 법의 특색, 형태, 본질, 내용과 성향
- 사회생활에서 국가와 법의 위치와 역할, 법률체계에서 국가와 법의 위치와 역할
- 권리, 정의감, 합법성, 합헌성
- 입법 과정과 입법 과정의 개별 단계
- 합법적인 행동
- 위법 행위와 법률상의 책임.

국가와 법이론 과목은 변경할 수 없는 과목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각각 구성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가 가끔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소련시대의 국가와 법이론에 대한 서적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모든 인민적인 국가와 법', '모두 행복한 국가', '국가는 야경꾼'과 같은 표현들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에는 '입헌국', '사회적 국가'와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 그리고 소련시대에는 연구하지 않았던 자연법론과 다른 학설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러시아에서는 국가와 법이론의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대 러시아의 법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제 2 절 사회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먼저 러시아에서 국가와 법이론이 사회과학 체계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법이론은 복잡하고 완전한 사회지식체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발전하여 왔다. 법치사회와 국가기초를 건설하는 정책방침의 제정은 순수법학개념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와 법률의 문제이다. 법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인류활동의 여러 영역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주체의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조건변화의 규칙을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사회현실개혁의 방향을 확인하며 과학적으로 예측하는데, 여기에는 기술과학이나 자연과학적 지식의 측면에 대한 예측도 포함된다.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의 발전 또는 실패에 대하여 경제, 철학과 법률은 자연계를 인식하고 기술과학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대의 긴박한 요구는 기술의 전통적인 관

념과 자연과학지식의 자아 봉쇄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대한 자연과학 문제를 연구할 때 경제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법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 및 사회과학 기타영역의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생활의 변화는 여러 국가의 역사과정에서 나타난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사회과학, 국가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역사학, 민족학, 윤리학 등이 어떻게 도덕, 종교, 민족의 모순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사회존재와 사회의식은 사회과학이 주목하는 핵심이다. 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영역이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특히 이들이 국가와 법이라는 공동 연구대상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철학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의 각 측면, 각각의 관계와 과정 사이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기초로 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해석한다. 철학은 사회발전의 가장 보편적인 규칙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는 법과 국가와 관련한 규칙도 당연히 포함된다. 철학은 법과 국가의 사회현상을 연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연구는 전문적으로 법과 국가를 연구하는 학과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과의 자료와 결론에 따라 국가와 법률 등 상부구조가 전반적인 사회발전 중에서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철학은 모든 법률학과 및 전체 사회학과의 이론적 기초이자 방법지침이다.

이것이 바로 왜 철학의 관점으로 법률생활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창조적인 법률과학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또 지속적으로 현행 입법을 개선하고 법치를 확고히 하는 전제조건인가 하는 이유이다. 철학적 성과의 기초가 있어야만 법과 국가의 변화, 운영체제 및 그들이 사회관계에 영향을 주는 규칙성이 과학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을 기초로 법학의 기본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과의 관계를 보면, 법과 국가의 기원, 실질과 기능은 현대 사회학이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이다.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 측면의 문제에 관한 과학이고, 사회전체와의 관계에서 특정한 사회제도, 절차 및 단체를 연구하는 과학인데, 이 역시 법과 국가와 같은 사회의식으로서의 주요 요소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학과 법과 국가이론의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양자의 구별은 대상과 학술 개념, 정의의 개괄정도, 인식의 구체화 수준과 법과 국가를 연구하는 관점에 있다. 법과 국가는 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만약 국가권력의 조직형식 또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수단 등과 같이 국가의 사회기초, 법의 사회가치, 법과 국가의 사회성을 제외한다면, 사회학은 더 이상 문제의 법적 측면이 중시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는 법과 국가이론과 정치학 사이에서도 존재하는데, 정치학의 주요한 임무는 정치, 정치발전, 정당, 사회조직과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정치학은 법과 국가생활에 융합되어 있으나 정치권력은 정치체제 속뿐만 아니라 정치관계의 기타 형식 속에서도 실행된다.

역사학과 같은 사회지식영역은 여러 문명의 유형, 시민사회 발전의 단계, 한 가지 사회경제형태와 다른 한 가지 사회경제형태의 교체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민족이 특정된 시간 내의 국가생활의 특정방식과 경험 및 일부 고대 법률문헌을 연구한다. 그러나 역사는 개괄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편적인 규칙을 형성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역사학이 법과 국가이론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또 경제학처럼 정치경제학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관계와 생산, 교환, 배분관계를 연구한다. 아울러 정치경제학은 국가와 법의 작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의 학문 분야가 국가와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과학이 이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현상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본질이 증명하기도 한다. 사회정치, 경제와 문화생활 및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여러 권력기관과 기구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국가는 관리하는데 이는 관리과학영역이고, 이러한 관리는 경제와 연관되고, 이는 경제사무이기도 하며, 국가는 정치주장을 펼치고 여러 정당과 협력하는데 이는 정치학이고, 국가가 사회학의 이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학이기도 하다. 법과 국가를 이해하려면 법과 국가를 벗어나 사회에서 국가와 법이 가지는 의의, 기능과 작용을 결정하는 문화, 사회, 정치경제 및 기타 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법이론은 법, 법률의식과 국가의 탄생, 발전, 운영의 일반 규칙에 관한 것이고, 국가와 법의 유형에 관한 것이며, 법과 국가의 정치, 계급, 본질, 및 그 인류사회적 본질, 내용, 형식 기능과 최종 운명에 관한 것을 포함한 사회과학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이나 기술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분야에서 국가와 법이론은 법치사회와 국가기초를 건설하는 정책방침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학문분야로 다른 여러 과학분야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와도 국가와 법의 현상은 공통적으로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국가와 법이론은 다른 사회과학의 분야와도 구별되는 활동과 의의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제 3 절 법학과학 체계상 국가와 법이론의 위상

법학과학 체계내에서의 국가와 법의 이론은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즉 법과 국가라는 연구대상은 복잡하여 많은 법률학과에서 이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학과는 일정한 측면과 일정한 단계에서

국가법률 현실의 특정된 측면이나 요소, 특징을 연구한다.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법과 국가의 구성에서 여러 성격이 다른 구성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은 다방면적이고 그 구조는 복잡하다.

학술적으로 고정된 공식에 따라 전체 법학체계는 크게 이론법학, 부문법학과 전문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부분, 구조, 기능, 측면 또는 단계를 연구하는가에 따라 법학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7]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시대의 변천 또는 작가의 주관적인 이해의 흔적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어떠한 분류방법도 현실의 변화, 즉 운동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학지식의 전문화와 특정 과정의 발전으로 인하여 항공법, 원자력법, 컴퓨터법 등 법률이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과학계로 하여금 생태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시장경제 발전의 정치적 노선으로 인하여 법학자들로 하여금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등 법률을 제정하게 하였다. 새로 생겼거나 기존의 법률현상(부동산 저당, 위탁관리, 사유화, 상업화 등)과 새로운 법률주체(은행, 주식회사, 상업기구 등)의 출현과 복잡화, 민사 유통영역의 확대 및 공민 권리의 증가 등은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과학연구와 법학의 새로운 유파의 탄생을 추진하였다.

---

7) 국가최고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현행 법학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법이론 및 국가와 법의 역사, 정치법률학설사
2. 국가법과 국가관리, 국가건설, 행정법, 재정법
3. 민법, 가정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4. 경제법, 중재절차법
5. 노동법, 사회보장법
6. 농업경제법, 토지법, 수법, 삼림법, 광산법, 환경보호법
7. 형법, 범죄학, 노동개조법
8. 형사소송과 형사수사학
9. 국제법
10. 법원조직, 검찰관감독, 변호사조직

부문법학 또는 전문법학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법률생활의 특정된 영역, 방향 또는 범위를 연구한다. 이러한 부문법학 또는 전문법학과 달리, 국가와 법이론은 국가와 법이 발전하는 보편적인 특수 규칙을 연구한다. 독특한 법의 연원으로서 국가와 법이론은 일반적이거나 비주류적인 법률학 분야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련시기에 국가와 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인식을 철학, 정치와 사회학의 시각에서 국가와 법이론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보편적인 기초 속에서 정치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학백과(法學百科) 등 독립적인 학과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전반적으로 국가와 법을 연구할 때, 국가와 법이론은 특정된 국가, 지역 또는 국가 법률생활의 특정 영역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역사시기의 법과 국가, 국가 법률현실 속의 모든 영역과 유파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법과 국가발전의 보편적인 규칙과 특수한 규칙, 또 기본적인 특징과 실질적인 특징을 확정한다. 법학체계 중 '사무논리' 자체가 국가와 법이론의 일반이론을 독립적인 지식부문으로 나누었는데, 그 원인은 현실생활에서 작용하는 것은 국가 법률규칙 및 국가와 법의 가장 현실적인 연계와 관계인데, 이들은 모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문법학과 전문법학이 연구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데, 만약 법의 본질, 내용과 형식, 부문법과 법률제도, 법률체계와 체계화, 법률규범과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어떠한 법학부문은 사회효과를 기대할 뿐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합법행위, 위법행위, 법률책임과 법치주의 등 일반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범죄행위, 특히 복잡한 조직범죄와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본질과 그 표현형식, 국가의 내용, 형식, 구조, 사회 작용과 의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서로 다른 역사 발전단계와 다양

한 국가유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민주적인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와 방향을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문법학 또는 전문법학에 있어서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은 영도성, 방향성과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는 종합적인 과학이다. 연구법학 또는 전문법학이 특수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에도 국가와 법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국가와 법의 일반이론은 부문법학의 성과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자신의 학술사상에 편입시킨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론적 성과가 부문법학의 성과를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은 아니다.

어떠한 이론이든 방법론이 많을수록 그 이론의 수준이 높다. 이러한 논증은 국가와 법의 일반이론에도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은 단일 학문이 축적한 지식을 기계적으로 더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와 법이론은 부문법과 전문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연계되기도 한다. 아울러 만약에 부문학문 분야가 목전의 국가 실제상황과 현행 법률을 강조한다면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은 연구과정에서 절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법률학의 성과를 종합하면 학문 분야들 사이에 서로 보충할 수 있고 국가 법률현실도 더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실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관계를 개혁하며, 다양한 법률주체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법률의 조정기능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증을 얻는 것이 모든 학문 분야의 임무이다.

요컨대 러시아의 법학에서는 법학체계를 이론법학, 부문법학, 체계법학으로 나누고, 국가와 법이론은 이론법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 4 절 법과 국가간의 상호간 영향과 보증작용

끝으로 러시아의 국가와 법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국가간의 상호 영향과 보증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법률 규정을 제정하는 직접적인 원천이고 동시에 그러한 규정을 실행하는 주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은 특수한 제도화의 구성물인 법률의 존재 자체에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권력은 법 속에 있고 법의 실질 속에 침투되어 있다.

국가는 법을 감독·보호하고 법의 잠재력을 통하여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해서도 안 된다. 국가주의적 관점은 법을 국가의 도구이자 국가의 특징 또는 상징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법도 상대적 독립성과 고유의 형성과 운영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법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더 많이 띠고 있다. 만약에 법을 국가의 도구로 보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바로 법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도 법의 도구라는 것이다.

국가가 법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입법과 법집행 영역에서 표현된다. 법은 국가의 끊임없는 참여 하에 형성되지만 국가는 법을 창조하거나 입법절차를 완성하거나 법에 특정된 법률형식(규범성 법률문건, 법원판례 또는 행정판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법의 최초의 원인이 아니다. 국가는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지만 법이 탄생한 근원은 물질적 생산방식, 사회경제발전의 성질, 사회문화와 인민의 역사전통 등에 있다. 이러한 중요한 원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가활동을 법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천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실증주의의 주요 결함도 이러한 인식 때문인데, 즉 국가를 법의 창조자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학이론 중 유행하는 법의 형성과 국가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관점 또한 문제가 있다. 국가의 조직활동을 떠난 제도 또는 법을 떠난 제도의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작용 역시 독특한 것이다. 국가는 입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법에 대해 진정으로 관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의 형성과 창조성에 대한 작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첫째, 입법활동을 실행한다. 사회발전의 인식규칙과 법의 자연적 기원의 규칙에 따라 국가는 법률규정에 대한 특정 관계(활동)의 수요를 확정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법률방식(법률과 집행권력문건 등)을 확정하고 보편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국가권력의 힘으로 법에 보편적인 법률형식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이는 진정으로 국가가 법률 규범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는 직접적인 국가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규범을 인정한다. 어떤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법의 '탄생'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예컨대, 무슬림법이 형성된 특징은 바로 국가가 무슬림이론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범을 승인한 것에 있다. 법률사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국가가 법률학설이 창조한 것 또는 법률을 해석·적용하면서 나타난 규정에 보편적인 강제성을 부여한 경우가 해당한다.

셋째, 사실상 이미 형성·존재하는 관계(그리고 그와 상응한 활동)를 법률이 강제로 조정하는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관계는 이로써 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고 소위 관습법과 판례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규범성 계약의 조문도 일반규범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는 법의 연원 체계의 발전을 보장하였다. 사회 속의 사회경제 수요와 정치형세에 따라 국가가 법에 대한 조정유형, 방식의 선택과 합법행위를 보장하는 국가법률 수단의 선택에도 큰 영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회의 법률환경을 관리하고, 법률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갱신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법률의 실행을 보장하는 작용은 더 중요하다. 역사적인 경험이 증명하듯이 국가의 보장이 없거나 국가가 참여하지 않고 국가자원을 이용하거나 법률규정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의 사명도 국가가 자신의 활동으로 공민과 조직에게 여러 가지 이익과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법률이 부여한 가능성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조직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창조하였다. 러시아의 경험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집행, 감독과 사법기관의 역부족이 법의 효력을 저해한다. 국가의 적극성은 사회생활 속에서 법률원칙을 확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국가는 이러한 적극성을 표현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자신의 사명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가권력도 이로 인하여 합법성을 상실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법과 통치적 지위에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국가 강제력은 법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존재하여 온 보장장치이다. 국가강제력의 배후에는 국가의 역량과 위상이 있다. 국가강제력의 위협 자체가 이미 법률을 보호하고 있고, 법질서로 하여금 공고해지게 하며, 사회주체의 창조적 활동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는 또 사회에서 법의 보급을 추진하고, 사회관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하며, 위법한 방식으로 중요한 사회성과를 얻는 것을 배제한다.

국가가 법에 대한 영향의 한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우선, 이는 법 자체의 조정 잠재력과 국가 및 그 기구가 현재의 사회경제와 정치조건 하에서 법률의 효력을 보장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능력은 높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이유는 이는 법률수단의 이상화를 초래하고 최종적으로 법의 사회가치를 낮추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도 법의 진정한 사명을 위반하여 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

률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회이익을 위하여 더 합리적으로 법률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법학에서는 국가와 법의 상호 관계와 작용에 착안하여 법의 의미와 역할, 기능을 연구하는 국가와 법이론이라는 학문적으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 3 장 현대러시아 법제의 발전과정과 연원의 위계질서

제 1 절 현대 러시아법제의 발전과정

1. 1991년 소련 붕괴 이전

러시아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있어서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발전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독특한 특징을 가능하게 하였다. 러시아가 서유럽국가들과 다른 발전과정을 가진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서유럽의 중심지들과 상당한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서유럽과 괴리가 생겼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70년 이상의 사회주의 체제도 이를 심화시켰다고 하겠다.[8]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최근 러시아의 법제도의 발전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신속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의 기저에 깔린 법문화로 자리잡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 러시아의 법제도가 형성된 것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 소련은 소위 페레스트로이카시대라 할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되기 전인 1980년대는 이미 소련의 현실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 있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소련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은 보통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8) И. А. Исаев,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России, (Юрист: Москва), 1994, cc. 259-413 참고. 한편 러시아법의 형성사적 특징에 대한 설명은 명순구-이제우, 러시아법입문, (민들레: 서울), 2009, 21-32쪽 참고.

‘재건’ 또는 ‘재편’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 ка)와 ‘개방’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찌(Гласность)이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개혁정책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실각과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지만,[9] 종래 고수되어 온 사회주의 체제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고르바초프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1989년 12월, 그리고 1990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소련 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그 중에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는 공산당과 국가의 분리, 공산당의 민주화, 의회제도의 개혁, 공산주의식 법치주의의 철저화 등을 위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10](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를 신설하여 종래 소련의 최고의사결정기구였던 소련최고회의[11](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를 해산하지는 않았지만, 인민대의원대회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였다. 인민대의원대회는 소련헌법의 채택과 헌법개정안의 제출, 소련의 대내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의 결정,

9) 그 외에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동구의 자유화와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독일의 통일,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의 여건을 만드는데 작용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0)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는 고르바초프가 1988년 6-7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19차 회의에서 정치적 개혁을 단행키로 하고, 1988년 10월 소련인민대의원선거법을 제정하고 1977년 헌법의 필수적 개정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소련 말기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에서도 존치되다가 1993년 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대의원의 수는 모두 2,250명이었다. 대의원은 3가지 방법으로 선출되었는데, 2,250명의 1/3인 750명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종래 소련에서 실시해오던 지역선거구(소선거구)에서 선출하였고, 다른 1/3은 민족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하였고, 나머지 1/3은 연방적 규모의 사회단체(공공단체)에서 선출하였다.

11)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1936년 헌법에 의한 것으로 소련의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입법권을 비롯하여 각 국가기관의 통제권을 가졌으며, 헌법개정권을 유일하게 가진 국가기관이었다. 최고회의의 상설기관은 최고회의 간부회(Президиум)이고, 간부회 의장(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은 소련의 국가원수였다. 최고회의는 양원제로 운영되었는데 상원격인 연방회의(Совет Союза)와 하원격인 민족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가 있었고, 양자는 동등한 입법권을 가졌다. 양원의 의원의 임기는 5년이었다.

소련 최고회의와 그 의장의 선출, 소련 각료회의 의장과 최고재판소장, 검찰총장, 최고중재법원장의 비준, 소련헌법감독위원의 선출 등의 권한을 가졌고, 소련최고회의 의장인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대통령의 자리를 신설하여 자신이 초대이자 유일한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다양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소련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공산주의적 통제경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소비자들의 수요에 더욱 적합하도록 사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개혁은 오히려 소련이라는 체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던 인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개혁보다 더 혁신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하였다.

2.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1990년 5월 29일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에 당선된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에 당선된 후, 동년 6월 8일 러시아연방공화국 영토에 대한 주권독립선언을 통하여 러시아연방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연방공화국 법률이 소련 연방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1991년 6월 12일 러시아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12] 대통령에 취임

12) 현재 러시아의 정식 국명은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Ф)이다. 그런데 소련 시대에 소련의 15개 구성공화국 중의 하나였을 때에는 러시아연방공화국(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СФСР)이라는 국명을 가졌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대통령을 사임하자 당시의 러시아최고회의의 결의로 러시아연방이라고 처음 변경되었다가, 1992년 5월 <러시아연방조약>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러시아연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3년 새로이 제정된 러시아 헌법 제1조 제2항은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과 러시아(Россия)라는 명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옐친은 공산당 활동 금지의 포고령 및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 등의 조언에 따라 급격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가격자유화와 민영화 또는 사유화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개혁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만큼 경제는 악화되었다.

이즈음에는 소련 내부의 15개 구성공화국들이 각각 소련으로부터의 탈퇴, 즉 독립을 추구하여 15개 구성공화국이 빠짐없이 독립선언 또는 주권선언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91년 9월 발틱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3개 구성공화국이 소련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로서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국이 소련의 해체와 새로운 독립국가연합[13](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НГ)을 결성하는 소위 벨라베자조약(Беловежские соглашения)에 서명하고 바로 뒤이어 다른 8개 소련 구성공화국이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결국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다. 소련의 해체는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타개해보려는 독립국가연합의 결성과 함께 15개 구성공화국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왔다.[14] 러시아연방은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 권리나 국제법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승계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

13) 영어로는 흔히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다.

14)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3국이 주도하고, 이어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8개국이 가입하여 소련 구성공화국 15개 중에서 모두 11개 구성공화국이 참여하였다. 구소련 구성공화국 중 발틱 3국과 그루지아는 처음부터 독립국가연합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그루지아는 소련의 압력으로 1993년 가입하였다가 그루지아의 친서방적 성향으로 러시아와 남오세찌야 전쟁을 치루면서 2008년 탈퇴하였다. 또 우크라이나도 독립국가연합의 최초 창립국가였지만 마찬가지로 친서방적 정책으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다가 2014년 크림위기를 계기로 탈퇴하였다. 현재는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9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초기부터 참여는 하였으나 독립국가연합헌장(Устава СНГ)에는 비준하지 않아 준회원국(ассоциированный член)의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러시아연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법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기초는 1993년 10월 12일 채택된 러시아연방 헌법이다. 현재 러시아 법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15)]

1993년 신 헌법 이후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한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맞춰 전면개정 되었다. 민법은 총칙・물권・채권총칙이 있는 제1부가 1995년에, 채권각칙이 있는 제2부는 이듬해인 1996년에 각각 발효되었으며, 상속법과 섭외사법 규정이 담긴 제3부는 2002년부터 발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러시아 민법전에는 상속 관련 규정만 있고 친족 관련 규정은 가족법전에 들어있다. 그리고 2008년 민법전이 개정되면서 제4부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다.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6년에 전면개정 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2001년에, 민사소송법은 2002년에 와서야 전면개정 되었다. 실체법인 민법전과 형법전의 전면개정이 신헌법 이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것에 비해, 소송법인 민사소송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전면개정이 늦어져 실체법과 소송법 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였다. 특이한 점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법전이 없고 상법전에서 규율되는 내용들이 모두 민법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또는 형성되고 있는 현대 러시아의 법률질서는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법치를 실행하는 결과는 사회 속의 사회관계의 질서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이익에 부합되는 사회관계를 인정・보호하고, 기타 사회관계는 법률규범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불법행위,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법률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서 확정된 “종이 위의 법”이 “현실적인 법”으로 되면서 질서가 나타나게 된다. 법률질서는 법과 법치를 기초로 하는 사회관계의 질서정연한 상태이다. 법

15) 자세한 내용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러시아법령검색방법”의 내용 참조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report/214?pageIndex=4)

률질서는 법이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주요한 목적이고, 이러한 법률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법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현대 러시아에서 법률체계는 전체 법규범이 그 대상과 방식에 따라 법률부문과 법률제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규범의 대상은 대상관계의 성질과 복잡성을 말하고, 그 방식은 직접규정의 방식, 허가의 방식 및 기타 방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부문은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법의 부문을 말하고, 법률제도는 선거제도, 재산제도, 정방당위제도 등을 말한다.

제 2 절 현대 러시아법 연원의 유형

러시아법제에 있어서 법원, 즉 법의 연원(Источник права)은 실정법과 비실정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먼저 비실정법의 연원은 흔히 자연법(Естественное право; jus naturale)으로 대표되는데, 객관적인 사상(이성과 지혜), 사물의 본성, 신의 의지체현 등으로 표현된다. 실정법의 연원은 국가의지의 표현형식이라고 이해하고, 국가의지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법의 형식과 변화를 인정하기 위함이거나 일정한 내용의 법이 종료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실정법의 연원으로 구체적으로 법률관습, 법률판례, 계약, 법률과 명령 등이 논의된다.

1. 법률관습

법률관습(правовой обычай)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중복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에 의해 인정된 강제성 행위규칙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성문법주의의 여느 국내법체계와 다르지 않다.

2. 법률판례

법률판례(правовой прецедент)는 어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 추후 비슷한 분쟁에 대해 보편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판결을 말한다.[16] 그런데 러시아에 있어서 헌법법원은 법률과 다른 법령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헌법법원의 결정은 다른 법원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법원도 헌법법원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 최고법원과 최고중재법원은 헌법법원과 달리 각각 하급법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하급법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판례에 대한 하급법원의 질의에 해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도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판례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실정법의 연원으로 보는 데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고중재법원은 법의 해석상 일관성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다(최고법원 절차규칙 제304조). 따라서 이러한 정도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판례법의 형태로 관습법화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그렇게 볼 경우 러시아에서도 실제적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어느 정도는 러시아법의 연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 약

계약(нормативный договор)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로서 법규범이 되는 것이다.[17] 계약은 국제적일 수도 있고, 또 한 국가 내에서 예컨대 연방과 연방구성주체간의 것일

16) ЮРИНФОРМЦЕНТР, ЮРИД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ЮРИНФОРМЦЕНТР), 1995, с. 231.

17) *Ibid*., с. 133; А. В. Вишнякова *et als*,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для населения, (Москва: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втура), 1988. с.259-260.

수도 있다. 또한 국제계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것, 정부간에 체결된 것, 또 정부 부처간에 체결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법률과 명령

법률과 법규범적 법령(нормативный правовой акт)으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인 실정법 연원으로 설명되는데, 이들이 성문법이라는 데는 공통적이며, 법률이 명령에 상위의 지위에 있다.

먼저 법률(закон)은 법의 외적 표현형식의 하나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성 법률문건을 말한다. 법률은 사회와 국가생활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지를 체현한다. 법률이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모든 기타 법률문건은 법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또 법률은 기타 기관의 어떠한 비준도 필요 없으며, 법률을 제정한 기관 이외에 어떠한 기관도 법률을 폐지할 수 없으며, 그리고 법률은 국가정권의 최고기관(의회) 또는 직접적으로 전체 인민들의 결정으로 제정된다는 의미이다.[18]

다음으로 명령(Подзаконный правовой акт)은 법률의 기초 하에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법률을 해석하기 위하여, 또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한 법률문건이다. 어느 문건이 명령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주체도 아니고 문건의 성질도 아니다. 명령의 주요한 특징은 규범성 문건의 등급 및 법적 효력의 종속관계를 체현하는데 있다. 법률의 최고성과 법률에 대한 기타 명령의 종속성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명령은 법률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입법규범의 실행체제에서 명령은 모든 집행행위의 기초로서 마치 절차법처럼 중요한 의의를

18) 러시아 헌법 제4조 제2항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전 영역에 있어서 최고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명령은 그 입법기관의 지위, 명령 자체의 성질과 의의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령(Акты президента РФ), 행정부에 의한 정부명령(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이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장관은 명령과 세칙을 제정하고, 지방정권 및 관리기관은 명령과 결정을 제정한다.

제 3 절 연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는 통상 연방차원과 지방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설명된다. 먼저 연방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을 최고법으로 하고, 입법부인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상위에 헌법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Законы о поправках к Конституции)과 연방의 헌법성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그리고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и соглашения РФ)을 순서대로 배치시키고 있다. 즉 헌법과 관련하여 헌법 자체와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과 헌법성 법률을 별개의 법령으로 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은 모두 광의의 헌법으로 이해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제조약을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е законы)보다 상위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 연방법률의 하위에 우리나라의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Акты Президента)과 행정부에 의한 정부명령(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행정부 각 부처에 의한 정부기관 명령(Ведомственные акты)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1. 러시아연방 헌법

먼저 현대러시아의 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행 러시아 연방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1993년 국민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러시아의 최고의 법규범이다.[19]

19) 러시아연방 헌법 제15조는 러시아연방 헌법은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 있어서 최고의 법률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지니고 적용되며, 러시아연방에서 적용되는 기타 법률문건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전문과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다시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헌법제도의 기초원리(제1조~제16조), 제2장 인간과 공민의 권리와 자유(제17조~제64조), 제3장 연방의 구성(제65조~제79조), 제4장 연방대통령(제80조~조93조), 제5장 연방의회(제94조~제109조), 제6장 러시아연방정부(제110조~제117조), 제7장 사법부와 검찰(제118조~제129조), 제8장 지방자치(제130조~제133조), 제9장 헌법의 개정과 재검토(제134조~제137조)이 그것이다. 제2부는 최종규정(잡칙)과 경과규정이다.[20]

그런데 러시아 헌법의 개정에 관한 법제는 독특하고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헌법 개정안(Предложения о поправках)이나 재검토안(Предложения о пересмотре)은 대통령(Президент),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연방정부(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구성주체(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입법(대표)기관, 그리고 연방의회 의원 1/5 이상 또는 국가두마 의원의 1/5 이상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다(헌법 제134조).

그러나 특이한 것은 러시아 헌법에서 그 개정 방식이나 절차를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러시아 헌법의 개정은 '재검토(пересмотр)', '개정(поправка)', '변경(изменение)'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재검토'는 헌법 제1장 헌법제도의 기초원리, 제2장 인간과 공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제9장 헌법의 개정과 재검토를 개정하는 경우를 말하고(헌법 제135조), '개정'은 러시아의 통치구조, 즉 국가권력구조를 규정한 헌법 제3장~제8장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36조).

---

20) http://constitution.kremlin.ru/(2014.11.5. 검색). 1993년 러시아 헌법은 2008년 11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때 개정된 내용은 공히 4년이던 대통령과 국가두마의 임기를 각각 6년과 5년으로 연장하였고, 일부 연방구성주체의 명칭을 약간 조정하거나 매우 간단한 절차로 연방구성주체의 통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제135조의 '재검토'와 제136조의 '개정'의 중요한 차이점은 재검토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헌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면, 헌법 제3장~제8장에 대한 개정안만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러시아헌법상 '재검토'와 '개정'이라는 용어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헌법 제135조는 제1장, 제2장 그리고 제9장의 개정, 즉 재검토는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21](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에 의하여 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재검토안이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와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재적의원의 3/5의 동의를 받으면 헌법제정의회[22](Конституционное собрание)가 소집되어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재검토안은 헌법제정의회 2/3 이상의 찬성 또는 국민투표로 채택된다.

한편 헌법 제136조에 의한 러시아 통치구조를 규정한 헌법 제3장~제8장의 개정을 위해서 1988년 2월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과 그 효력에 관한 연방법률(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и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поправок к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제정하였다.

끝으로 헌법 제137조의 개정, 즉 '변경'은 헌법 제65조[23]의 개정의

---

21) 여기서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는 상원으로서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와 하원으로서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의 양원 모두를 말한다.

22) 헌법제정의회는 1993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러시아 헌법에는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е собрание"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에는 이 외에도 "Учред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ассамблея" 등의 명칭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5조에 의하면 예컨대 "헌법의회에 관한 연방헌법성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обрании)"과 같은 입법이 뒤따라야 되는데, 실제에는 현재까지도 그러한 입법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3) 헌법 제65조는 제3장 연방의 구성의 첫 조항인데,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Субъе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관한 규정이다. 먼저 그 제1항은 러시아 연방의 구성주체는 모두 85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2개 공화국(республики), 9개 지방(краёв), 46개 주(областей), 3개 연방시(гор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1개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와 4개 자치관구(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а)로 구성되어

경우만 해당한다. 헌법 제137조의 개정은 이러한 연방구성주체의 가입과 신설, 또는 연방구성주체의 헌법적 및 법률적 지위의 변경, 그리고 연방구성주체의 명칭의 변경은 헌법성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연방구성주체와 관련한 헌법성 법률은 모두 6개이다.

2.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Законы РФ о поправках к Конституции))은 비록 법률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계질서상 헌법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헌법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헌법 제136조에 의하여 헌법 제3장~제8장의 개정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이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은 제3장~제8장 중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포하는 법률이다. 즉 그때그때의 헌법 개정 시마다 그 개정된 헌법조문을 명시한 법률로서 사실상 개정될 새로운 헌법조항인 것이다. 2014년 현재까지 모두 4개의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24]

있다. 그리고 그 제2항은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로의 가입과 신설에 관한 규정이다. 러시아연방은 다민족국가이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통계인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연방에는 184개의 민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demoscope.ru/weekly/ssp/rus_nac_02.php(2014.11.6. 검색)). 따라서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러시아민족과 많은 소수민족과의 공생을 위한 연방결성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러시아헌법상 연방구성주체는 단순한 지방행정구역이 아니라 소수민족을 고려한 연방구성요소이다. 예컨대 공화국은 러시아연방과는 다른 독자적인 공식 언어와 헌법을 가질 수 있다(러시아연방 헌법 제68조).

24) 첫 번째는 2008년 12월 31일자 <№. 6-ФКЗ 31>로 개정된 헌법조문은 제81조와 제96조. 두 번째는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자 <№. 7-ФКЗ>로 개정된 헌법조문은 제103조와 제114조. 세 번째는 2014년 2월 5일자 <№. 2-ФКЗ>로 개정된 헌법조문은 제71, 83, 102, 104, 125, 126, 128, 129조와 제7장의 표제, 그리고 제127조는 삭제. 네 번째는 2014년 7월 21일자 <№. 11-ФКЗ>로 개정된 헌법조문은 제83조와 제95조.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의 제정은 헌법성 법률의 제정과 똑같이 진행되며, 국가두마 의원들의 2/3 이상의 찬성과 연방의회 의원들의 3/4 이상의 찬성, 그리고 모든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 법률은 14일 내에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대통령은 인민에게 공포하고 1개월 내에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연방 헌법성 법률

연방 헌법성 법률(Федеральны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законы; ФКЗ)은 헌법의 일부는 아니다. 헌법성 법률은 헌법에 그 입법이 가능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25)]

-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구성주체의 채택을 위한 절차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 변경
- 러시아연방의 국기, 표장, 국가의 지정과 이들의 공식적 이용을 위한 절차
- 러시아연방 정부 운영절차
- 러시아연방 사법체계 설정
-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최고법원, 최고중재법원 등의 권한, 구성, 운영 등
- 국가비상사태 및 전시체제
- 헌법제정의회 소집을 위한 절차

그런데 러시아 헌법법원은 헌법 제136조의 해석에 관한 사건에서 헌법성 법률이 입법절차를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헌법성법률은 러시아법제의 위계질서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

25) 러시아 연방헌법에서 헌법성법률이 입법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5항, 제70조 제1항, 제84조 в호, 제87조 제3항, 제88조, 제103조 제1항 е호, 제114조 제2항, 제118조 제3항, 제128조 제3항, 제135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등이다.

고 있는데, 연방 헌법성 법률은 연방 법률을 개폐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8개의 헌법성 법률이 제정되었다.[26] 헌법성 법률은 국가두마 재적의원 2/3 찬성과 연방회의 재적의원 3/4 찬성으로 제정된다(연방헌법 제108조). 제정된 법률은 14일 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포한다.

4. 러시아연방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을 비롯하여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국제협정(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и соглашения РФ)은 러시아 법체계의 구성부분이다. 러시아연방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제조약들이 러시아 법률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러시아연방 법률과 국제조약이 충돌하면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실제로 시민이나 사회단체, 국가기관, 법원이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방 법률을 국제조약에 맞게 수정할 때까지 국제조약의 규칙을 따른다.[27]

5. 연방법률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е законы; ФЗ)은 러시아법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법원이다. 연방 입법기관, 즉 국가두마에 의해 채택되는 법령으

---

26) 헌법성법률의 목록은 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F%D0%B8%D1%81%D0%BE%D0%BA_D1%84%D0%B5%D0%B4%D0%B5%D1%80%D0%B0%D0%BB%D1%8C%D0%BD%D1%8B%D1%85_%D0%BA%D0%BE%D0%BD%D1%81%D1%82%D0%B8%D1%82%D1%83%D1%86%D0%B8%D0%BE%D0%BD%D0%BD%D1%8B%D1%85_%D0%B7%D0%B0%D0%BA%D0%BE%D0%BD%D0%BE%D0%B2_%D0%A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E%D0%B9_%D0%A4%D0%B5%D0%B4%D0%B5%D1%80%D0%B0%D1%86%D0%B8%D0%B8 참고(2014.11.11. 검색).

27) 이는 국제법학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П. Н. Бирю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Москва: ЮРАЙТ), 2012, с. 249.

로 러시아연방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그리고 러시아연방과 그 구성주체들의 관할권이 공동으로 미치는 영역내에서 연방 헌법에 따라 입법된다. 따라서 연방 법률은 러시아 전 영역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모든 하위법령은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채택된다. 연방 법률은 대통령, 국가두마 의원이나 연방회의 의원, 연방정부,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표)기관 등 입법발의권(законодательн инициатив)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연방 법률안(проект ФЗ)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헌법법원, 최고법원, 최고중재법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관할사항에 있어서는 입법발의권을 보유한다.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 회부되는데, 국가두마에서 3회의 독회를 걸쳐서 일반다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3회의 독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연방 법률의 제목에 "안(проект)"이라는 표현을 떼게 되나, 아직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 후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연방회의에서 거부된 경우에는 국가두마는 다시 그 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회의의 승인을 얻은 연방 법률 연방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연방대통령은 법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에 대해서는 국가두마와 연방회의의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편 연방법률 중에는 '법전(Кодекс)'이라는 명칭을 가진 연방 법률이 있다. 법전은 특정 분야나 몇 개의 분야의 통일적이고 체계화된 법규칙을 모은 법률[28]로서, "통합법"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29] 따

28) А. Я. СУХАРЕВ, ЮРИД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4, с. 136; ЮРИНФОРМЦЕНТР, *op. cit. supra* note 1, с. 124.

29) 예르쇼바-아트뉴코바 저, 채희석 역, 러시아기업법, (서울: 법문사), 2013, 57쪽.

라서 법전의 구조는 보통 당해 분야의 체계를 반영한다. 2014년 현재 러시아에는 19개의 법전이 있다.[30][31]

법전은 법적 추구와 법의 실행 과정에서 법률을 더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하나의 분야의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법전도 법의 기초가 되고, 이는 통상 특정한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하위법령(подзаконные акты)에 의하여 보완된다. 법전의 일부에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사법부는 해당 법전에서 당해 사건의 판결의 근거를 찾게 된다. 왜냐하면 법전은 융통성 있게 해석되고, 그러한 해석은 법전으로부터 발견된 일반적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 원칙은 통상 법전의 도입부인 제1장에서 입법취지를 천명함으로써 명백히 표현된다. 예컨대 러시아 민법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은 시장경제의 '헌법'이라고도 불려진다. 민법전은 법원간의 위계질서상 특별한 점이 있는데, 만약 다른 법전에 민법전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민법전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민법전 제3조는 연방대통령령, 연방정부명령 및 정부기관의 명령에도 민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법전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새로운 법전이나 법은 법률에서 구법이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법에 우선한다.

---

30) 이 법전들은 중재절차법전(Арбитражный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예산법전(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물(水)법전(Водный кодекс), 공기(空氣)법전(Воздушный кодекс), 도시계획법전(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민법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민사소송법전(Гражданский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주택건설법전(Жилищный кодекс), 토지법전(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내수운송법전(Кодекс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행정법위반법전(Кодекс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상업항행법전(Кодекс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삼림법전(Лесной кодекс), 조세법전(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가족법전(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관세법전(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관세동맹관세법전(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노동법전(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행형법전(Уголовно-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형사소송법전(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형법전(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등이다.

31) 각 법전의 조문은 http://www.kodeksrf.net/참고(2011.11.10 검색).

6. 연방대통령 명령

연방대통령[32] 명령(Акты Президента РФ)은 다시 정령(указ)과 지시(распоряжение)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연방대통령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령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연방헌법과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연방대통령의 명령은 러시아법원의 위계질서상 헌법과 연방법률 다음에 위치하지만, 하위법령(подзаконный правовый акт)보다는 상위이다. 그리고 연방대통령의 정령과 지시는 러시아 영역 전체에 구속력을 가진다.

헌법에서는 연방대통령의 정령과 지시의 법적 구별은 없다. 그러나 정령은 계속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적 성격을 가진 연방대통령의 명령이다. 여기에는 연방정부나 중앙부처의 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정치적 피난처의 허가에 관한 사항, 국가포상이나 특별칭호, 러시아연방 명예칭호의 수여에 관한 사항, 사면에 대한 사항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시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명령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의 기능, 조직의 구성, 인사 및 담당업무 등을 규율하는 명령으로, 그 내용이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연방대통령 국가법관리부(Государственно-прав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ГПУ)는 정령과 지시의 공식적인 해설을 할 수 있다.

---

3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다. 연방대통령은 총리를 포함한 정부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군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겸한다. 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연방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두 후보간에 결선투표를 한다.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7.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러시아 연방정부가 발령할 수 있는 명령(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은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я)과 지시(распоряжение)로 나누어진다. 결정은 규범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의 정령과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규범적 성질이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연방예산의 편성과 국가두마의 심의, 연방예산의 집행, 금융・신용・통화정책, 문화・과학・교육・보건・사회보장, 생태환경 부문에서 조화된 국가, 연방재산 관리, 국가방위를 위한 조치, 국가의 안전, 국제정치의 운용, 합법성, 시민의 권리와 자유, 재산보호와 공공안전 보호, 범죄와의 전쟁, 헌법・연방법률・대통령 명령으로 정한 권력 등에 대해서 헌법, 연방법률, 대통령이 정한 규범적 정령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정부가 결정이나 지시를 발령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결정과 지시는 헌법, 연방 법률과 대통령 명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위배된 경우는 대통령이 그 결정이나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8. 정부기관 명령

다음으로 정부기관 명령(Ведомственные акты)이 있다. 여기서 정부기관이란 연방집행권력기관(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Ф, ФОИВ)을 말한다. 연방집행권력기관이란 러시아 연방 영역내에서 국가관리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을 말한다. 각 기관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들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과 지시의 범주 내에서 규범적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들이 발령할 수 있는 규범적 성질을 가진 명령들은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я), 훈령(приказы), 지시(распоряжения), 규칙(правила), 지침(инструкции), 규정(положения) 등[33]이다. 이들 정부기관의 명령들은 법무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에 의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얻는다. 이들 정부기관의 명령은 연방헌법, 연방법률, 연방대통령 명령, 연방정부 명령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위배되는 경우 연방정부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 4 절 지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다음으로 지방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헌법(헌규)을 최고법으로하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최고책임자 명령,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집행권력기관 및 명령지방자치 기관의 명령으로 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지방차원에서의 러시아 법원의 위계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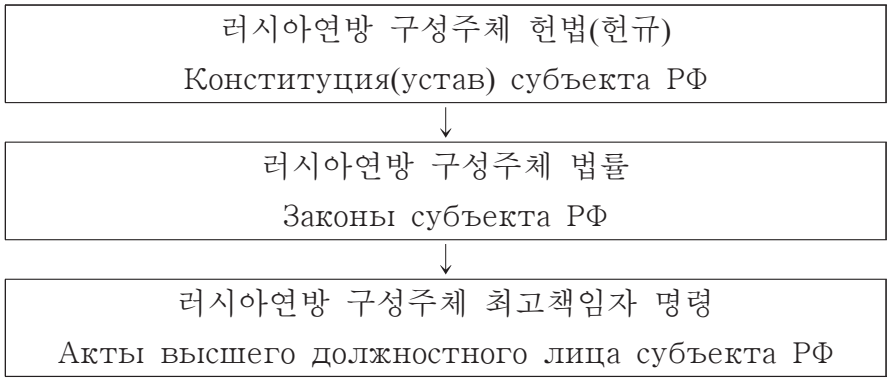

33) 그 법적 근거는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3.08.1997 №. 1009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одготовки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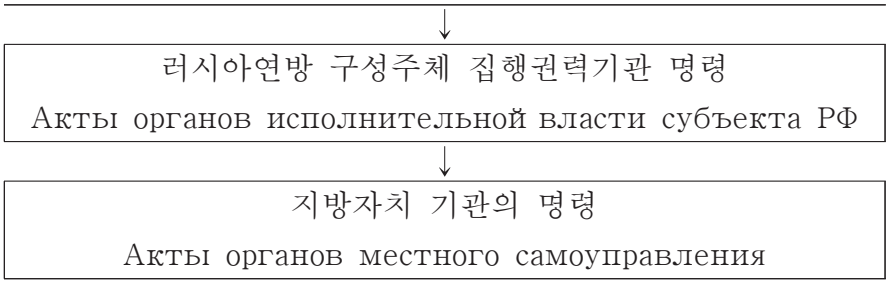

1.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법과 헌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는 각자의 단위에서 최고의 법률문건으로 독자적인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또는 헌규(устав)를 제정할 수 있다(러시아연방 헌법 제66조). 먼저 공화국은 헌법(Конституция)을, 그 외의 구성주체들은 헌규(устав)를 가질 수 있다.[34]

먼저 공화국은 연방헌법과 자신의 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지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연방구성주체, 즉 지방, 주, 연방시, 자치주, 자치관구 등도 연방헌법과 자신의 헌규를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규정한다. 공화국의 헌법과 그 외의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규는 당해 단위의 입법기관이 제정한다. 그리고 그 개정은 그 헌법과 헌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2.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은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사항 또는 구성주체만의 단독적인 관할사항에 대해서 연방 법률 근거하여 구성주체가 제정한 법률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

34) 현재 85개 연방구성주체 중에서 독자적인 헌법을 가진 것은 22개 공화국(республики)이고, 독자적인 헌규를 가진 것은 6개 지방(краёв), 16개 주(областей), 3개 연방시(гор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1개 자치관구(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а), 기타 1개로 모두 26개가 된다.

방 법률 위배해서는 안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은 그 구성주체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의 입법권은 당해 지방의회(региональные парламенты)가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구성주체 자신의 헌법 또는 헌규에 따른다.

3. 지방하위법령

지방하위법령(Региональные подзаконные акты)으로는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я), 지시(распоряжения), 훈령(приказы)와 기타 다른 형태의 명령이 있다. 지방하위법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집행권력기관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들 하위법령의 목적은 연방대통령의 정령(указ)과 연방정부의 결정(Правительство)의 실행에 있다.

4. 지방자치기관의 법률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기관은 국가권력체제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연방헌법 제12조). 러시아연방 헌법 제13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예산을 편성・확정・집행하고, 지방세와 공과금을 결정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률(Акты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 ния)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들이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률, 그리고 해당 연방구성주체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제 1 절 연방의회

1. 구성과 특징

러시아 연방헌법은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가 러시아연방의 국회(парламент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자 러시아연방의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орган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연방헌법 제94조).

러시아연방의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는 양원(двух палаты)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верхняя палата)에 해당하는 연방회의(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СФ, Совфед)와 하원(нижняя палата)에 해당하는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ГД, Госдума)가 그것이다(연방헌법 제95조).

연방의회는 상설기관이다(연방헌법 제99조). 그리고 연방의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회기관이나, 이것이 양원이 언제나 공동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서로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하지만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메시지나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의 메시지 또는 외국 국가원수의 연설의 청취를 위해서 합동으로 소집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100조). 양원간의 기능과 권한이 헌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시에 연방회의 의원(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과 국가두마 의원(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을 겸할 수 없다.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없다. 따라서 연방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국가두마의 선거절차에 대해서 연방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각각 1명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대표를 두어 양원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연방회의[35]는 양원제의 상원으로 각각의 러시아연방 구성주체(субъекта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파견한 2명씩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 중 1명은 국가권력 입법(대표)기관의 대표이고, 다른 1명은 국가권력 집행기관의 대표이다(러시아연방 헌법 제95조 제2항). 2014년 현재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22개 공화국(республики), 9개 지방(краёв), 46개 주(областей), 3개 연방시(гор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1개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4개 자치관구(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а) 등 모두 85개가 있다. 따라서 연방회의 의원(Член)의 수는 170명이 된다.

연방회의는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가진다(연방 헌법 제102조).

- 러시아연방의 각 구성주체간의 경계 변경의 승인
-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비상사태(чрезвычай ное положение)에 관한 정령(указ)의 승인
- 러시아연방 국경 이외에서 러시아연방의 무력사용 가능성 문제의 결정
-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확정
- 국가두마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경우 탄핵(импичмент)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해임
- 러시아연방 헌법법원(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Ф), 최고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РФ) 및 최고중재법원(Высшый Арбитраж ный Суд РФ)의 판사를 임명
- 러시아연방 검찰총장(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РФ)의 임명과 해임
- 러시아연방 감사원(Счетной палаты) 부원장(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과 감사위원의 반수의 임명과 해임

35) 러시아 연방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council.gov.ru/(2014.11.11 검색).

전술한 바와 같이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면 각각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2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여 연방회의를 구성하는데, 그 중 한명은 국가권력 입법(대표)기관의 대표이고, 다른 한명은 국가권력 집행기관의 대표이다.

1993년 12월 연방회의 의원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제1기 연방회의의 임기는 1994년 1월부터 1996년 1월까지 2년이었고, 제2기 연방회의의 임기는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5년이었으며, 제3기는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0년이었으며, 제4기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이다.

1995년 말 <연방회의구성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각 연방구성주체가 연방회의에 파견한 위원은 각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의 입법(대표)기관의 장(глав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과 집행기관의 장(глав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때부터 연방회의는 진정으로 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 2월 <연방회의구성법>이 개정되어 연방회의 위원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각 연방구성주체 위원 또는 시급 대표기관의 위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각 연방구성주체의 입법기관의 장과 행정기관의 장의 선거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회의 의원의 교체시기도 각기 달랐다.

그리하여 2012년 푸틴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후 <연방회의구성법>을 다시 개정하여 각 연방구성주체가 파견한 2명의 연방회의 의원의 당선방식을 현지 행정장관이 1명을 임명하되 임기는 그 본인의 임기와 같고, 나머지 1명은 현지 입법기관에서 1명을 임명하되 임기는

그 입법기관에서의 임기와 같게 하였다. 개별적으로 양원제를 실행하는 연방구성주체는 상원과 하원에서 번갈아 대표를 선출하여 그 연방구성주체의 연방회의 위원으로 파견하고 임기는 상응한 상원(또는 하원) 임기의 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방회의 의원의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30세 이상일 것, 명예에 흠이 없을 것, 당해 연방구성주체의 영역에 5년의 정주생활을 했을 것 등을 추가하였다.[36)]

연방회의의 조직과 구성은 그 위원 중에서 연방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거하고,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조직하고 회의의 내부제도를 관리한다. 또한 연방회의는 그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할문제에 대해 입법적 검토, 의회청문회를 진행하며, 의사규칙(Регламен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37)]을 제정하여 의사활동상의 절차문제를 해결한다(연방헌법 제101조).

현재 연방회의는 1명의 제1부의장과 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상설기관인 연방회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연방회의 활동의 여러 조직문제를 사전에 준비 및 심의하고, 매월 연방회의 회의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승인한다. 또한 총 10개의 위원회[38)](Комитеты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헌법성법률・법률・사법문제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правовым и судебным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36) http://council.gov.ru/about/history/참고(2014.11.5 검색).

37) 의사규칙은 연방회의의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е)으로 채택된 것인데, 현재의 의사규칙은 2002년 1월 채택된 것이다. http://council.gov.ru/about/regulations/참고 (2014.11.5. 검색)

38) 각 위원회에 관하여는 http://www.rosvlast.ru/bd_free.aspx?fid=500004 참고(2014.11.5. 검색).

- 연방사무・지역정책・지방자치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федеративному устрой ству,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 тике, местному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и делам Севера)
- 국방・안전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оборон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국제사무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 예산・금융시장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бюджету и финансовым рынкам)
- 경제정책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 농업식량정책・자연이용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аграрно-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ю)
- 사회정책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학문・교육・문화・정보정책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науке, образованию, культур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 의정활동규율・조직위원회(Комитет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гламенту и организац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모든 연방회의 의원은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나 오직 하나의 위원회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다만 연방회의 의장은 어느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 각 위원회는 11명에서 21명 사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39]

39) http://council.gov.ru/about/status/ 및 http://council.gov.ru/structure/committees/ 참고(2014.

2. 회의제도

연방회의는 당선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주최하고 그 후부터 의장과 부의장이 번갈이 주최한다.

연방회의 정기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열리고 주로 입법문제를 토론한다. 연방회의의 회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열리고 매년 7월 중순과 8월에는 휴회한다. 회기에는 의원들이 매일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의회 내부기관의 업무시간을 정한다. 이 기간에는 의원은 연방회의의 비준 없이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를 떠날 수 없고,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참석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연방회의는 정기회 이외에 국가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상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상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회의의 임무를 완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회의의 회의기간은 비교적 짧다. 비상회의의 소집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가원수, 정부, 연방회의 이사회, 몇 개의 연방구성주체, 일정한 수의 의원 등이다.

연방의회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양원제체제 하에서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를 양자간의 관계구조 하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3. 권한과 의무

연방의회는 무엇보다도 의안제안권을 가진다. 연방의회의 양원 대표는 의안제안권을 가진다. 즉 양원의 대표는 법률초안, 법률초안의 수정

11.5. 검색).

안, 러시아 현행 법률의 개정 및 보충적 법률 초안과 관련 법률의 시행을 승인하는 법률 초안을 국가두마에게 제출할 권리가 있고, 또 새로운 연방 헌법성법률과 연방법률의 제정과 통과를 위한 입법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연방 헌법성법률 조항의 개정과 재심의에 대한 의견은 양원 중 어느 한 개 원의 5분의 1이상의 대표가 제기할 수 있다.

또 연방의회는 질의문의권을 가진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질의의 주체는 연방회의 양원의 의원 또는 의원단이다. 질의의 대상은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장, 각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장, 연방구성주체의 각 집행권력기관과 지방자치기관의 장이다. 질의는 서면 형식으로 양원의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를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질의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고, 답변은 서면형식 이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문의는 국가두마의 모든 의원 또는 의원단이 러시아연방정부의 구성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역시 서면형식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연방정부의 관련 구성원원은 국가두마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두마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방문권도 가진다. 양원의 의원은 그 임기 내에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기업・조직・사회연합조직, 부대 및 기타 군사조직을 방문할 권리가 있고, 방문기간에 이러한 기관, 기구, 조직의 장과 면회할 수 있다. 이때 양원 의원은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제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문제에 답변하여야 한다. 만약에 즉시 답변하기 어렵거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양원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양원 의원은 자신이 질문한 문제의 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 회의가 비밀회의라도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조사기관, 수사기관과 법원 등 기관에서 의원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반면 연방의회 의원들의 의무도 있는데, 우선 유권자들과의 연계의무가 있다. 연방회의 의원과 단일선거구에서 당선된 국가두마 의원은 관련 선거구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책임지고, 전체 연방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가두마 의원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그 의원이 어느 지역의 유권자들과 연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의원은 유권자들과의 만남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활동상황을 통보하고 유권자들과 교류한다. 의원은 반드시 유권자들이 제출한 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건의, 의견을 관련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과 사회연합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의 공개의무도 있다. 양원 의원은 모두 연방세무기관에 개인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 신고서의 사본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러시아연방연방회의 공보>에 공포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임금지의 의무도 있다.

연방의회의 의원이 임기 내에 효과적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 헌법은 양원 의원에게 직무, 생활 및 법률 면에서의 여러 가지 보장조치를 규정하였다.

직무보장은 주로 의원의 정보수집권리에서 표현된다. 즉 의원은 제때에 연방의회의 양원에서 통과된 문건을 파악하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사무실,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과 사회연합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문건, 정보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적시에 파악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그가 관련된 국가기관, 사회조직을 방문하면서 필요한 정보도 적시에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원에 대한 정보공개는 문건 비밀등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은 본원 사무청사 내에 자신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고, 의원활동을 진행하면서 관련 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기차, 비행기, 버스, 선박 등 교통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출장 시에는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5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법적 보장은 연방의회 의원은 임기 내에서 법률상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의회의 관련 기관의 동의 없이 양원 의원은 사법절차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심사를 받거나 사법기관에서 구류, 체포, 수사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와 연방 법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 의원의 몸을 수색할 수 없다. 이 밖에 의원은 면책특권을 향유하는데, 그 주택, 사무실, 수화물, 개인 및 대중 교통수단, 편지, 통신기계 및 개인 문건에도 적용된다. 의원의 임기 내의 발언, 의결시의 입장 및 그 의원 지위에 부합하는 기타 행위(타인에 대한 의원의 모함과 공개적인 비방 및 연방 법률 금지하는 기타 위법행위는 제외)는 그 임기 내와 임기 만료 후에도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이 제안하고 연방의회의 관련 기관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직무수행 중에서 알게 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상황에 대해 양원 의원은 입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원은 임기 내에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국가에서 징수하는 군사비용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기타 건강상의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 장애 또는 장단기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보험기관에서 상응한 보험금을 지불한다. 이외에 장애 또는 장단기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는 추가로 달마다 기존의 월급과 현재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생활보장은 우선 의원의 급여 처우에서 나타난다. 즉 국가두마 의장 이외에 국가두마의 모든 의원의 월급은 모두 러시아연방 정부 부장의 월급과 부가금의 합계와 같고, 국가두마 의장의 월급은 러시아연방정부 총리의 월급과 부가금의 합계와 같다. 한편 연방의회의 의원은 국가가 그 원래 급여액수에 따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두마와 같은 급여액수를 지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의원의 직무 처우에서도 나타난다. 즉 의원은 임기 내에서의 근무 기간은 총 근속연수와 연속근속연수에 포함되거나 전문근속연수 또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의 업무 또는 기존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의 동의를 받은 후 기존의 직장에서 동일한 수당의 업무 또는 직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기타 기업, 기관 또는 조직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제 2 절 국가두마

1. 구성과 특징

국가두마[40]는 양원의 하원(нижняя пала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450명의 의원(депутат)으로 구성된다(연방헌법 제95조). 국가두마 의원은 러시아의 성년인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두마는 연방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한 러시아연방정부 총리의 임명에 동의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의 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장과 감사원장 및 그 반수의 감사위원, 연방헌법성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대표의 직무

40) 러시아 국가두마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duma.gov.ru/(2014.11.11. 검색).

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리고 사면을 선포하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헌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결의한다(연방헌법 제103조).

1993년 러시아 신헌법은 국가두마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며 임기는 4년이었다. 만 18세 이상의 러시아 공민(법원으로부터 행위무능력자를 선고받거나 또는 형벌을 선고받고 구류 중인 자는 제외)은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만 21세 이상의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러시아연방 공민은 국가두마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제1대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1995년 <국가두마 대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두마 선거는 혼합선거제도를 시행하는데, 즉 450명 국가두마 의원의 절반은 정당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른 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나머지 절반은 단일선거구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다.

2005년 5월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두마선거법을 통과하였는데, 동법은 모든 국가두마 의원은 정당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전체 연방 선거구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고, 유권자들의 7%이상의 투표를 받은 정당은 국가두마에 들어가 의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8년 말 러시아는 헌법개정안을 통과하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였고, 2011년 12월 새로운 국가두마 선거 때부터 적용되었다. 2009년 초, 러시아는 다시 국가두마선거법의 개정안을 통과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국가두마 선거에서 5%-6%과 6%-7%의 투표를 받은 정당은 각각 1개와 2개의 두마 의석을 결정하는데, 이 역시 2011년 새로운 국가두마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41]

1993년 러시아의 신헌법의 제정 이래 역대 국가두마의 회기는 다음과 같다.

41) http://www.duma.gov.ru/about/history/ 참고(2014.11.5. 검색).

- 제1대 1994년~1996년(1993년 12월 선거)
- 제2대 1996년~2000년(1995년 12월 선거)
- 제3대 2000년~2003년(1999년 12월 선거)
- 제4대 2003년~2007년(2003년 12월 선거)
- 제5대 2007년~2011년(2007년 12월 선거)
- 제6대 2001년~2016년(2011년 12월 선거)

국가두마는 그 의원 중에서 국가두마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국가두마는 여러 상임위원회(комите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와 전문위원회(Комисс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국가두마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기관으로 국가두마 전체를 구성하는 의원수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그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가두마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42] 반면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된다. 전문위원회는 당해 국가두마의 임기 전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한다.[43]

그 관할 문제에 대해 의회 청문회를 진행한다. 또한 자신의 의사규칙을 통하여 두마 활동에 관한 내부절차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한다.

현재 국가두마는 1명의 수석부위원장과 9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국가두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두마 이사회(Сов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를 구성하여 국가두마 활동과 조직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심의하고, 반면 각 위원회 위원장(또는 그가 위탁한 부위원장)은 이사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

42) 제6대 국가두마는 현재 3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duma.gov.ru/structure/machinery/committees/ 참고(2014.11.5. 검색).

43) 제6대 국가두마는 현재 6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duma.gov.ru/structure/committees/ 참고(2014.11.5. 검색).

2. 회의제도

국가두마의 회의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두마 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30일 되는 날에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그 이전에 국가두마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제1차 국가두마 회의는 제일 연장자가 주최·소집하고, 그 이후로는 국가두마 위원장, 부위원장이 번갈아 주최한다.

국가두마 회의는 봄과 가을에 진행하고 봄에는 1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고, 가을에는 9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회의기간에 의원들은 매일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의회 내부기구의 업무시간을 정한다. 이 기간에 의원은 의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를 떠날 수 없고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참석하거나 진행할 수도 없다.

국가두마도 비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연방회의와 같다.

국가두마 회의는 개별문제에 대해 비밀투표를 하는 경우 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언론기자들에게도 개방한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국가두마 의원과 유권자들이 만나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있다.

또 국가두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권력기관의 의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국가두마 의원은 국가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도 없으며 기타 수익활동에 종사할 수도 없다. 다만, 교육, 연구 및 기타 창작활동은 예외로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연방회의와 같다.

국가두마의 경우에는 정당이 관여한다. 현재 국가두마는 4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Фракция)로 있는데, 이는 통일러시아당(Всероссий 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ЕДИНАЯ РОССИЯ»)(315석), 러시아연방 공산당(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57

석), 러시아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40석), 공정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38석)이다.

제 3 절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러시아연방에서의 재판(Правосудие)은 오직 법원(суд)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법권(Судебная власть)은 헌법재판(конституционное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민사재판(гражданское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행정재판(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형사재판(уголовное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에 의하여 실현된다.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는 연방헌법과 헌법성법률에 의하여 확립된다.[44] 여기서 헌법성법률은 1996년 제정된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성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하에서는 "사법제도법"이라 약함)>이다. 비상적인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연방헌법 제118조). 법원의 독립은 연방헌법과 헌법성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연방헌법 제120조).

러시아 사법제도는 일정한 통일성을 가지는데,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는 연방헌법과 헌법성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 또 모든 연방법원과 치안법원(мировая судья)이 연방 법률 의하여 확립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재판을 운영한다는 것, 모든 러시아연방의 법원은 연방헌법, 헌법성법률, 법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원칙과 국제법,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의 헌법과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법제도에 관한 법령의 러시아연방 전역에서의 적용이 강제됨이 승인되어 있다는 것, 법원의 지위가 통일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 연방의

44) 이 사법제도법의 전문은 http://pravo.gov.ru/opencms/proxy/ips/?docbody=&nd=102044804 (2014.11.5. 검색).

법원과 중재재판관이 연방예산으로부터 재정이 부담된다는 것 등이 그러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러시아 사법기관은 흔히 헌법법원(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суды), 일반관할법원(Суды общей юрисдикции), 군사법원(Военные суды), 중재법원(Арбитражные суды)으로 구분한다.

아래에서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러시아연방 헌법법원과 일반관할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그리고 러시아 사법제도상의 특수한 형태인 중재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최고중재법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구 성

러시아연방 헌법법원[45](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헌법과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에 관한 헌법성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하에서는 "헌법법원법"이라 약함)[46]>에 의하여 규율된다.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1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1항). 그 중 10명의 법관과 9명의 법관이 각각 2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법관은 연속으로 3년 이상 동일한 재판부에 있을 수 없다(헌법법원법 제20조).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법원장 1인과 부법원장 2인을 두고 있는데, 법원장과 부법원장은 19명의 법관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임기는

45)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ksrf.ru/(2014.11.5. 검색).

46) 이 헌법법원법이 러시아연방의 제1호 헌법성법률이며, 1994년 제정되었다. 이 헌법법원법의 전문은 http://pravo.gov.ru/opencms/proxy/ips/?docbody=&nd=102031141 (2014.11.5. 검색).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법원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법원장은 헌법법원 전체회의의 준비작업을 주관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전체회의와 각 재판부회의에서 심의할 과제를 제출하고, 국가기관, 국가조직과 사회단체와의 연계에서 헌법법원을 대표하고 헌법법원의 위임 하에 헌법법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법원 법원장은 법원의 각 기관을 통할하고, 헌법법원 사무국, 각종 기관과 부서의 책임자명단을 제출하고, 사무국의 규칙초안과 각종 기관 구성원명단 초안을 헌법법원에 제출한다(헌법법원법 제24조).

러시아연방에서 헌법법원의 법관은 만 25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5년 이상의 법률 관련 직업의 경력이 있는 러시아 공민만이 될 수 있다(연방헌법 제119조). 이러한 후보자들 중에서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의 의원,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 최고재판기관과 연방법률 주관부서, 전체 러시아 법률연합회, 법률 연구・교육부서 등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법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초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헌법법원 법관을 지명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 14일 내에 연방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연방회의에서 1인1표 원칙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한 선거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연방 헌법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다(헌법법원법 제9조).

2. 권 한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헌법감독사법기관으로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헌법감독을 실행하는 재판기관인데(사법제도법 제18조 제1항),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해당 자료의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즉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연방회의 의원 또는 국가두마

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방법률,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정부의 규범성 법률문건, 공화국의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다른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규(устав),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중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와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공포한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건,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의 위헌여부 등을 심사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2항).

그리고 러시아연방 각 기관 사이의 직권범위에 관한 분쟁도 해결한다. 즉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사이나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 사이, 그리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최고국가기관사이의 직권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3항).

또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공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소원이나 법원의 질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4항).

그리고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기관의 질의에 따라 러시아연방 헌법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5항).

마지막으로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은 연방회의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제출한 국가배반죄 또는 기타 중요한 범죄에 대한 기소가 관련 절차의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연방헌법 제125조 제7항).

3. 심리원칙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독립성의 원칙, 집체영도제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사건심리의 구두진술원칙, 헌법법원 회의 연속의 원칙, 당사자평등의 원칙과 변론의 원칙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독립성의 원칙이란 헌법법원의 법관는 독립적이고 러시아연방헌법과 러시아연방헌법법원법의 규정만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헌법법원법 제29조 제1항).

집체영도제의 원칙은 사건을 심리하거나 문제를 연구하거나 또는 관련 결정을 통과할 때 헌법법원의 집체영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법원의 전체회의는 3분의 2이상의 법관이 출석, 각 재판부 회의는 4분의 3이상의 법관이 출석하여야만 결정이 통과될 수 있다(헌법법원법 제30조).

공개성의 원칙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헌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더라도 그 결정을 공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법원법 제31조).

사건심리의 구두진술원칙이란 헌법법원 회의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구두진술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리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진술과 감정인,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법원법 제32조).

헌법법원 회의 연속의 원칙은 헌법법원에서 각 사건에 대한 심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휴식시간, 소송참여자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시간,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헌법법원법 제34조).

당사자평등의 원칙과 변론의 원칙은 헌법법원 회의에서 당사자의 권리는 평등하고 변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헌법법원법 제35조).

4. 심리절차

헌법법원에 소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청구서, 신청서 또는 소원서 등 서면형식으로 헌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법원법 제36조, 제37조). 이러한 청구서를 접수하면 헌법법원은 이를 등록하고, 1명 또는 여러 명의 법관이 등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청구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다(헌법법원법 제41조). 만약에 청구서상의 내용이 헌법법원의 관할이 아니거나 청구서의 양식에 하자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청구서를 제출하였거나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국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수정할 것을 통지한다(헌법법원법 제40조 제2항).

사전심사를 거쳐 통과된 청구서에 대해 법관들은 사전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그 청구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헌법법원법 제42조). 만약에 청구서상의 내용이 헌법법원의 직권범위 밖이거나 신청서가 관련 법률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청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법원에서 현재까지 유효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리거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헌법법원법 제43조).

사건을 수리하면 헌법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회의에서 심리할 지를 결정한다(헌법법원법 제47조). 회의를 소집하고 각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 등의 진술을 청취・심리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헌법법원 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때 회의

에 참석하는 법관은 그 사건 심리에 참여하였던 법관만 참가할 수 있다(헌법법원법 제70조).

최종결정은 통상 회의에 참석한 법관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되는데, 러시아연방헌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결정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통과된다(헌법법원법 제72조 제2항, 제4항). 결정이 통과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한 모든 법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헌법법원법 제75조). 서명을 받은 조서는 헌법법원 공개회의에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2일 내에 헌법법원 전체 법관, 당사자,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정부, 인권사무의 책임자, 러시아 최고법원, 러시아 최고중재법원, 러시아 검찰총장에게 송달해야 하고(헌법법원법 제77조),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의 공인출판물과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공보에 등재하여야 한다(헌법법원법 제78조).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에서 통과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고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문건 또는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발효하지 않은 국제조약도 준수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헌법법원법 제79조).

제 4 절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최고중재법원

1.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러시아연방 최고법원[47](Верховный су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법적 지위는 1993년 12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인정이 된 것이지만, 헌법 외에도 1996년 사법제도법과 2011년 <러시아연방 일반관할법원에 관한 헌법성법률(ФКЗ «О судах общей юрисдик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하에서는 “일반관할법원법”으로 약칭

47)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vsrf.ru/(2014.11.5. 검색).

함), 2002년 <러시아연방 법원의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татусе суде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사법공동체기관에 관한 연방법률(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органах суд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및 2014년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에 관한 헌법성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Верховном суд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하에서는“최고법원법”으로 약칭함)[48]> 등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및 그 소속된 보통관할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기타 사건의 최고재판기관이다(연방헌법 제126조). 또한 연방최고법원은 다른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인 공화국, 지방, 주, 연방시, 자치주 및 자치관구의 법원, 구 및 함상 군사법원의 직접적인 상급심이며, 아울러 이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 해석할 수도 있다(사법제도법 제19조).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에서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대통령의 비규범성 법률문건, 연방회의의 각 부처의 비규범성 법률문건이나 러시아연방정부의 비규범성 법률문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공민과 조직의 권리, 자유와 합법적 권익에 관한 대통령의 규범성 법률문건, 러시아연방정부의 규범성 법률문건, 기타 연방 국가권력기관의 규범성 법률문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법관의 권리의 중지 또는 정지 결정과 법관 의 퇴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 정당이나 전 러시아 수준의 사회조직 및 국제조직의 활동을 중지하거나 이를 해산하는 사건, 2개 이상의 연방구성주체에 지역성 종교조직을 둔 중앙종교조직을 해산하는 사건, 러시아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연방헌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분쟁이

48) 이 최고법원법의 전문은 http://www.pravo.gov.ru 참고.

나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분쟁에 관한 사건, 러시아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편에 관한 사건 등이다.

2.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49](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С РФ)은 1992년 설치되어 러시아연방의 경제분쟁과 러시아연방의 중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재판기관이다(연방헌법 제127조).

최고중재법원은 전원회의, 원무위원회, 민사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기타 종류의 심판위원회를 증설할 수도 있다(중재법원법 제11조).

전원회의는 최고중재법원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최고중재법원의 법원장, 부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된다(중재법원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전원회의는 직권으로 중재법원 실무 중에서 적용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건을 연구하고 실무상의 문제에 대한 해석, 입법발의문제의 결정,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문제의 결정, 최고중재법원 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구성원 중 최고중재법원 전원회의 의장의 선거, 최고중재법원 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최고중재법원 심판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책임자 및 최고중재법원 원무위원회 법관의 확정, 최고중재법원에 여러 심판위원회의 구성문제의 결정, 연방구성주체의 지역 중재법원의 상설 사무지점을 확정, 제1상소심 연방중재법원과 연방구성주체 중재법원 상설심판기구의 구축문제를 결정하고 그 사무지점을 확정하며 최고중재법원 부법원장들 중 그 책임자를 임명, 연방의 구역 중재법원 원장의 건의에 따라 연방구역 법원 원무위원회를 구성할 법관을 결정, 연방구성주체 중재법원

49)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arbitr.ru/(2014.11.5. 검색).

원장의 건의에 따라 연방구성주체 중재법원 원무위원회를 구성할 법관을 결정, 제1상소심 연방중재법원 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상소심 연방중재법원 원무위원회를 구성할 법관을 결정, 연방최고법원 법원장의 건의에 따라 중재법원 규정의 비준 등이 있다(중재법원법 제13조 제1항).

전원회의는 최고중재법원 법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는데 매년 적어도 2번 소집하여야 하고, 전체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할 경우에만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정은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고 최고중재법원 법원장과 비서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중재법원법 제14조).

최고중재법원 원무위원회는 최고중재법원 법원장, 부법원장과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고중재법원의 법관도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러시아연방중재법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원무위원회는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중재법원이 발효한 법원문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러시아연방 중재법원 사법실무상의 일부 문제와 이송한 심리결과를 심리한다(중재법원법 제16조). 원무위원회는 최고중재법원 법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과반수의 구성원이 출석하면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고 최고중재법원 법원장이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투표를 기권할 수 없다(중재법원법 제17조 제1-3항).

최고중재법원 심판위원회는 최고중재법원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법관은 원장의 건의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최고중재법원 법원장과 부법원장이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재판위원회를 총괄하고, 필요시에는 법원장은 1명의 심판위원회 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 특정사건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심판위원회는 제1심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실무 중의 문제를 연구하며

입법이나 기타 규범성 법률문건에 관한 건의를 심사하며 재판통계자료와 기타 중재법원 규정을 분석한다(중재법원법 제18조).

그런데 이러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 최고중재법원이 최근인 2014년 8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13년 7월 푸틴 대통령은 상 뻬쩨르부르그에서 열린 한 인민경제에 관한 포럼에 참석하여 최고법원과 최고중재법원을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어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2013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국가두마에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러시아연방 검사에 관한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안(проект Закона РФ о поправке к Конституции РФ «О Верховном Суд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окуратур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최고중재법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과 소속인원을 최고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50] 2013년 11월 국가두마는 제2독회(чтение)에서 최고중재법원을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에 통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두 법원을 통합하는 이 법률안에 서명하였다. 이 때 법원의 재조직을 위해 주어진 기간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었다. 이리하여 최고중재법원은 2014년 8월 6일부로 그 활동이 종료되었다. 러시아연방헌법에 따라 최고중재법원의 권한과 기능은 2014년 2월의 연방헌법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따라서 최고법원에 이전되어 편성됨으로써 전술한 최고중재법원의 권한과 기능은 이제는 최고법원에서 소관하고 있다.

제 5 절 주요 입법절차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Законопроект)의 발의권은 러시아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원, 국가두마 의원, 러시아연

50) 이 법률안의 전문은 http://www.iuaj.net/node/1365 참고(2014.11.5. 검색).

방 정부, 각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표)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러시아연방 최고법원과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도 그 소관의 범위 내에서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안은 국가두마에 제출되는데, 다만 세금의 시행 또는 취소, 면세,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동 등과 관련된 법률안 또는 연방예산으로 지출을 보충하는 규정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을 거친 후에야 제출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04조).

연방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가두마에서는 법률안을 3회의 독회(чтение)를 걸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하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법률안의 제목에 “안(проект)”이라는 표현을 떼게 되나 아직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 국가두마를 통과한 법률안은 5일 내에 심의를 위하여 연방회의에 송부되어야 한다.

연방회의는 국가두마에서 송부되어 온 법률안을 심의하여 연방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해당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연방회의에서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안은 연방회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방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양원은 협상위원회(согласи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를 열어 양원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방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연방 법률에 대해 국가두마는 재심의해야 하고, 재심의과정에서 국가두마 전체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해당 연방 법률은 통과된 것으로 본다(연방헌법 제105조). 다만, 연방 헌법성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의 경우에는 전체 연방회의 위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전체 국가두마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통과된 것으로 본다(연방헌법 제108조 제1항).

통과된 연방 법률은 5일 내에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서명 및 공포하여야 하는데, 만약 14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파기할 경우, 국가두마와 연방회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재심의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연방회의 위원 또는 국가두마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연방헌법 제106조).

제 5 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제 1 절 외국투자법의 주요내용

러시아의 현행 외국투자법(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은 1999년 7월 제정된 <러시아연방 외국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다.

이 외국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의 러시아의 외국투자 상황은 소련의 개방과 붕괴 이후의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단일화된 제도가 없이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각종 외국투자 관련 법령들은 그 규정들간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법적 안정성이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이에 1999년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단일화된 특별법인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그 후로 총 7차에 따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51]

---

51) 러시아의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연혁은 http://pred-pravo.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9:2010-10-28-07-00-34&catid=15:2010-10-28-06-53-41&Itemid=21 참고(2014.11.5. 검색). 외국투자법은 전문 외에 총 2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прин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ой 1 ноября 2011 года и одобрен Советом Федерации 9 ноября 2011 года.

1. 목 적

현행 외국투자법은 전문에서 ‘이 러시아 연방법률은 러시아연방으로 진행되는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자와 그에 따른 이익의 환수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러시아 경제에 외국투자로부터 자본 및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제법의 준수 및 국제적 투자협력관계를 보장한다’고 하여 외국투자의 안전성과 이윤의 환수를 보장하고, 투자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2. 적용범위

러시아의 외국투자법은 러시아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를 국가차원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 중에서 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보험 관련 단체 등에는 이 외국투자법은 적용되지 않고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또는 보험에 관한 연방 법률 적용한다. 또한 러시아의 비영리단체법이 적용되는 교육단체나 자선단체에의 투자나 학술・연구단체나 종교단체에의 투자에도 외국투자법은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비상업적 조직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법 제7조와 제16조는 러시아연방 경제특구에 투자한 산업생산, 기술투자, 관광・레크레이션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투자법 제1조).

3. 외국투자자의 보호

러시아 국경 내에서 외국투자자[52]의 활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

52) 외국투자자란 그 소재국 또는 국적국의 법률에 따라 민사권리능력이 인정되고 러

한다. 이러한 보호는 외국투자법, 기타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법령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보장한다. 만약 러시아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부작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는 러시아연방 민사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외국투자법 제5조).

외국투자자의 투자방식을 보호한다. 즉 외국투자자는 러시아 국내에서 관련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외국투자법 제6조).

외국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를 보호한다. 외국투자자는 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만약 국가 또는 그 전담국가기구가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출자하여 그 투자활동에 담보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가 그 권리를 그 국가 또는 전담국가기구에 양도할 경우 이 역시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외국투자법 제7조).

국유화 및 수용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손해배상을 보호한다.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특수한 경우 이외에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재산은 강제로 국유화되거나 수용될 수 없다. 수용될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에 피수용 재산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수용이 종료되면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은 사법절차에 따라 계속 보류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이미 획득한 배상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재산의 가치저하로 인한 손실도 고려하여야 한다(외국투자법 제8조).

시아 경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외국법인, 비법인조직, 자연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영주국의 법률에 따라 상기 자격을 갖춘 러시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제조직 및 러시아연방법률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국가도 포함된다(외국투자법 제2조 제1호).
또한 외국투자란 러시아연방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러시아 국내에서의 유통이 금지되지 않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투자자 소유의 외국자본(화폐, 유가증권, 기타재산, 재산권,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정보 등)을 러시아 국내에 투자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투자법 제2조 제2호).

러시아 연방법률의 변화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만약 우선투자사업[53]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당일에 수입물품 관세, 연방세, 국가예산에 납입하는 외부기금비용의 폭을 조정하는 새로운 연방 법률 공포하였거나 또는 기존 연방 법률 개정・보충하여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이 우선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거나 외국투자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증가하게 될 경우 이러한 새로운 법률 또는 개정・보충된 부분은 7년 동안 우선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에서 러시아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은 해당 우선투자사업에 전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에서 외국투자의 비중은 25%를 초과하여야 한다(외국투자법 제9조).

투자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보호한다. 외국투자자가 러시아 국내에서 투자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라 법원, 중재법정 또는 국제중재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외국투자법 제10조).

수입, 이윤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의 사용 및 송금을 보호한다. 외국투자자가 러시아연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수입이나 이윤을 자유롭게 사용, 재투자[54] 또는 연방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러시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이나 이윤은 투자를 통하여 얻은 이윤・주식배당금・이자・기타수입, 외국투자의 상업조직 또는 러시아 국내에 지점을 설립한 외국법인이 계약을 집행하거나 기타 무역상의

53) 우선투자사업이란 러시아연방정부의 비준을 받아 사업 리스트에 포함된 사업으로 외국투자의 전체 규모가 10억 루블을 초과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 상업조직에 1억 루블 이상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업을 말한다(외국투자법 제2조 제5호).

54) 재투자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이 외국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입이나 이윤을 러시아 국내의 경영활동 객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투자법 제2조 제7호).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수입, 외국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상업조직 또는 외국법인이 설립한 지점을 철수하거나 또는 투자재산・재산권・지식재산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 국유화 또는 수용에 따른 배상금 등이 포함된다(외국투자법 제11조).

외국투자자가 자신이 외국투자를 위하여 러시아 국내로 반입한 기계, 서류 또는 전자저장기록의 형식으로 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외국투자법 제12조).

외국투자자가 러시아연방 유가증권법에 따라 러시아 상업조직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과 국가유가증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외국투자법 제13조).

외국투자자가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외국투자자는 국유재산과 지방소유재산의 사유화와 관련된 연방 법률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재산과 지방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유화 기업의 법정자본의 일정한 액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외국투자법 제14조).

외국투자자는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성주체의 법률에 따라 토지, 기타 자연자원, 건물, 시설과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 법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은 경매를 통하여 임대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외국투자법 제15조).

우선투자항목을 집행하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에 대해 연방관세법과 연방세법에 따라 관세혜택을 제공한다(외국투자법 제16조).

연방구성주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연방구성주체의 예산자금과 지방예산자금 및 예산 외의 자금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기타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다(외국투자법 제17조).

4.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설립과 철수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설립과 철수는 연방 민사법전과 기타 연방 법률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은 법인으로 사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은 관련 기관에 상업조직의 정관과 설립계약서(연방 민사법률이 규정한 경우), 외국투자자 소재국의 상업목록 또는 외국투자자의 법적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외국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발급한 그 지불능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세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제도와 도덕을 보호하고 타인의 건강・권리・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방위와 안전 등 목적으로 외국투자의 상업조직의 등록은 거절될 수도 있다. 거절당한 외국투자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외국투자법 제20조).

5. 외국법인 지점의 설립과 철수

외국법인의 지점을 설립하는 목적은 그 모회사가 러시아 국외에서 종사하는 경영활동을 러시아 국내에서 진행하기 위함인 바, 철수 시에는 외국법인인 모회사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의 설립, 경영활동 및 철수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 역시 헌법제도와 도덕을 보호하고 타인의 건강・권리・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방위와 안전 등 목적으로 등록은 거절될 수도 있다(외국투자법 제21조).

모회사는 관련 연방기관에 지점의 정관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관에는 지점 및 그 모회사의 명칭, 모회사의 법률조직형식, 러시아 국내에서의 지점 소재지, 모회사의 법률상의 주소, 지점의

설립목적 및 그 경영사업, 지점 고정재산투자의 구성, 금액 및 기한, 지점의 관리절차 등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점의 경영 특징이나 관련 법률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다. 외국법인의 지점의 고정재산투자에 대한 산정은 모회사에서 러시아 국내가격 또는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진행하되 러시아연방 화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지점은 등록된 날로부터 러시아 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철수하면 즉시 러시아 국내에서의 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외국투자법 제22조).

제 2 절 경제특구법의 주요내용

러시아연방 경제특구법은 러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 특수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2일에 제정되었고, 2006년 6월 8일에 개정되었다.

1. 경제특구의 유형

러시아연방 경제특구는 공업생산형 경제특구, 기술보급형 경제특구, 관광형 경제특구 등 3가지 유형이 있다(제4조 제1항). 그 중 관광형 경제특구는 2006년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경제특구 유형이다.

2. 경제특구의 설립요건

경제특구는 러시아의 국유토지 또는 지방토지에 설립해야 한다(5조 제1항). 또한 하나의 경제특구는 여러 개의 지역에 설립될 수 없고 또 행정구역 전체가 경제특구로 될 수 없다(제4조 제3항).

이 밖에 연방경제특구법은 유형별로 추가적인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업생산형 경제특구의 경우 토지면적은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통일적인 경계가 있

는 지역성 토지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또한 해당 구역의 토지는 공민과 법인의 소유 또는 사용 중인 토지가 아니어야만 하는데, 다만 공사기초시설용지 또는 해당 구역에 이미 그러한 유형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5조 제2항). 이 밖에 공업생산형 경제특구의 토지에는 국가 또는 지방 소유의 시설만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기초시설과 교통기초시설은 제외한다(제5조 제4항).

또 기술보급형 경제특구의 경우 2개 이상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고, 총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제4조 제2항). 또한 기술보급형 경제특구의 토지는 공사기초시설용지 또는 해당 구역에 이미 그러한 유형의 토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민과 법인의 소유 및 사용 중인 토지가 아니어야 하는데, 다만 교육과 과학연구기구는 제외한다(제5조 제3항). 이 밖에 기술보급형 경제특구의 토지에는 공사기초시설과 교통기초시설을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 소유의 시설만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기초시설과 교통기초시설은 제외한다(제5조 제5항).

끝으로 관광형 경제특구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연방정부에서 확정한 구역의 토지위에 설립할 수 있는데, 전체 행정구역이 관광형 경제특구로 될 수도 있다(제2조, 제3조). 또한 관광형 경제특구의 토지는 공민 또는 법인의 소유 또는 사용 중인 토지일 수도 있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국가, 지방, 개인 소유일 수 있다(제5조 제6항).

3. 경제특구의 설립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결정은 러시아연방정부에서 정부명령의 형식으로 내려진다(제6조 제1항).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최고 권력집행기관은 지방권력집행 관리기관과 함께 러시아연방정부에 경제특구 설립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경제특구의 설립이 연방,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및 지방의 임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진술하여야 하고 연방정부에서 경제특구 신청시 기재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한다(제6조 제2항).

러시아 연방정부, 경제특구를 설치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최고권력 집행기관, 지방권력 집행관리기관은 러시아연방정부가 경제특구 설립에 관한 결정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① 구체적으로 러시아연방 예산,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예산, 지방 예산으로 경제특구의 공사, 교통, 사회, 창조 및 기타 기초시설건설을 지원하는 규모와 기한, ② 경제특구 및 그와 인접한 구역의 건설과 상응한 재료기술건설 계획, ③ 경제특구의 장기발전계획과 융자절차의 제정, ④ 경제특구 및 그 인접 지역의 건설과 물자기술제공계획에 따라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또는 지방 예산으로 출자하여 건설하는 자산, 경제특구내의 자산, 경제특구의 기초시설에 속하지만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제특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권, ⑤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또는 지방 예산으로 건설한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 및 기초시설 자산의 관리방법, 및 그 사용과 보수, ⑥ 경제특구를 철회한 이후,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또는 지방 예산으로 건설한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리 절차, ⑦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에서 경제특구 상주자들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무, ⑧ 경제특구 감독관리위원회의 성립절차, ⑨ 연방권력집행기관에서 부여한 권리에 따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집행기관이 경제특구를 관리하고 경제특구의 존속 기간 내에 그 구역의 토지와 기타 부동산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⑩ 연방권력집행기관에서 부여한 권리에 따라 지방권력집행기관이 경제특구를 관리하고, 경제특구의 존속기간 내에 그 구역의 토지와 기타 부동산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⑪ 기타 연방경제특구법에서 규정한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경제특구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제6조 제6항).

4. 경제특구내의 토지 양도 및 사용 절차

경제특구의 관리기관은 경제특구설립계약과 러시아연방법률 및 연방경제특구법의 세칙에 따라 경제특구 내의 토지를 관리하고, 또 특구 내의 토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이 임시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연방 법률 따라 그 부동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제32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양식과 임대료의 계산방식은 경제특구의 설립과 운영에서 입법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연방권력집행기관에서 확정한다(제33조).

5. 경제특구의 관세제도

경제특구에 보관하거나 경제특구에서 생산하는 외국 화물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화물은 러시아연방에서 대외무역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상의 경제적 제재와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하는 러시아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제도상의 수출에 따른 소비세를 징수하고 수출관세는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자유관세구역의 관세제도라고 한다(제37조 제1항).

이때 자유관세구역의 관세제도에 따라 보관하는 화물에는 외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에 수입되는 화물, 러시아연방 세관 내의 기타 지역에서 경제특구로 수입되는 화물 및 경제특구 내의 비경제특구 주민이 취득하는 화물이 포함된다(제37조 제3항). 공업생산 또는 기술개발활동의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화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으나 무역활동의 범위는 러시아연방정부에서 경제특구 설립사항을 경정하면서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제5항, 제6항).

경제특구 주민이 공업생산 또는 기술보급활동을 위한 상품을 경제특구 내로 반입하거나 경제특구 주민 및 비경제특구 주민이 경제특구에서 반출하는 모든 상품은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제37조 제7항), 경제특구주민의 신청양식과 자료는 연방세관 행정부서에서 정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화물은 경제특구 내에 보관할 수 없다(제37조 제14항, 제15항). 또한 경제특구 내로 상품을 반입하고자하는 경제특구 주민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기 15일 전에 자유관세구역의 관세제도에 따라 경제특구로 반입한 화물과 무역활동을 진행한 서면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조 제11항).

러시아연방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특구내의 화물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 기타관세 구역에서 경제특구로 반입된 자유관세구역 관세제도에 따라 경제특구주민이 보관하고 있는 외국 화물과 비경제특구 주민이 취득한 외국화물에 대해 세관부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제37조 제17항). 다만 자유관세구역 관세제도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화물을 경제특구 밖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비경제특구 주민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자유관세구역의 관세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제37조 제18항).

그리고 자유관세구역의 관세제도에 따른 외국 화물이 러시아연방의 기타 관세구역에 유통되거나 비경제특구 주민에게 양도된 경우, 세관은 러시아연방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고 세관신고를 수리한 당일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다(연방경제특구법 제37조 제19항).

제 3 절 상업조직절차법의 주요내용

러시아는 2008년 <러시아연방 외국자본의 진입이 국방과 국가안전에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절차법(이하에서는 “상업조직절차법”

으로 약함)>을 제정하였다. 상업조직절차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

상업조직절차법은 국방과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국방과 국가안전에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등록자본을 취득하거나 그 상업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제1조).

여기서 '국방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은 개인, 사회 또는 국가에 지극히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조건과 요소를 가리키고, '국방과 국가안전에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이란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성립되고 이 상업조직절차법 제6조에서 열거한 국방과 국가안전에 전략적 의의가 있는 활동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상업조직을 가리킨다. 상업조직절차법 제6조에서 전략적 의의가 있는 활동유형으로 모두 42개를 열거하고 있다.[55]

---

55) 상업조직절차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략적 의의가 있는 활동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수문기상 과정과 현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에 종사하는 활동
2) 지구물리 과정과 현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에 종사하는 활동
3) 전염병 병원체의 연구와 관련된 활동
4) 핵시설, 방사성물질, 핵원료와 방사성물질 보존지점과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소의 설치, 구축, 운영과 정지운영 활동
5) 핵원료와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활동(우라늄광의 탐사와 개발, 핵원료와 방사성물질의 생산, 이용, 가공, 운송과 보존 포함)
6) 방사성폐기물의 보존, 가공, 운송과 매장과 관련된 활동
7) 과학연구와 설계과정에서 핵원료와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활동
8) 핵시설, 방사성물질, 핵원료와 방사성물질 보존지점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소의 계획과 설계 활동
9) 핵시설, 방사성물질, 핵원료와 방사성물질 보존지점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소의 이용설비의 설계와 제조 활동
10) 핵시설, 방사성물질, 핵원료와 방사성물질 보존지점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소와 관련된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핵원료,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활동과 관련

된 핵안전과 방사성 안전의 설계와 기술 문건에 대한 검토 활동
11)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고 암호시설을 이용한 보호를 받고 있는 통신시스템, 전신시스템의 연구와 제조 활동
12)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고 암호시설을 확산하는 활동
13) 러시아연방법률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받고 암호시설을 유지하는 활동
14) 정보암호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15) 건물과 기술설비에 감춘 정보수집전자장치의 측정활동(법인이 자신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16)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감춘 정보수집용 특정 기계를 연구, 생산, 수출 또는 취득하는 활동
17) 무기와 군사장비의 연구 및 제조 활동
18) 무기와 군사장비의 생산활동
19) 무기와 군사장비의 보수활동
20) 무기와 군사장비의 회수와 이용 활동
21) 무기와 군사장비의 무역활동
22) 무기와 군사장비의 부품의 생산활동(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기, 민간용과 공무용 무기의 생산은 제외)
23) 무기총탄과 총탄의 구성부품의 생산활동(민간용과 공무용 무기의 총탄 생산은 제외)
24) 무기, 사격무기의 구성부품과 무기총탄 무역활동(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기, 민간용과 공무용 무기 및 그 총탄의 무역은 제외)
25) 탄약 및 그 구성부품의 연구, 제조와 생산 활동
26) 총탄 및 그 부품의 회수 이용 활동
27) 공업용 폭발재료의 생산 및 그 유통 활동
28) 항공안전의 보장활동
29) 우주활동
30) 항공설비의 연구 제조 활동(군사용과 민간용 항공설비 포함)
31) 항공설비의 생산 활동(군사용과 민간용 항공설비 포함)
32) 항공설비의 보수 활동(군사용과 민간용 항공설비 포함)(민간용 항공기구에서의 부품 보수는 제외)
33) 항공설비의 실험 활동(군사용과 민간용 항공설비 포함)
34) 러시아연방의 절반 및 그 이상 인구의 영토 범위 내에서의 텔레비전 전파 활동
35) 러시아연방의 절반 및 그 이상 인구의 영토 범위 내에서의 무선전파 활동
36) 199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 러시아연방 제147호 법률 <자연독점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독점기업 목록상의 자연주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공공 전력수송 제공, 우정통신서비스, 난방제공,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독점 경제주체는 제외)
37) 러시아연방 <경쟁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명단에 있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가 종사하는 활동
a) 러시아연방 영역 내의 통신서비스 시장 활동(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б) 러시아연방의 5개 및 5개 이상의 연방구성주체 내에서의 고정 전화서비스시장 활동

또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상업조직에 대한 통제'란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그러한 상업조직 주주총회 등록자본 중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그 상업조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관리기구에 참가하고 이러한 상업기구를 통하여 관리기능을 발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상업조직의 결정을 지배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략적의의가 있는 연방 광산지에서 지질광산자원연구,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상업조직의 등록자본의 10%를 소유하거나 투표 가능한 주식 1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그 상업조직의 단일 권력집행기구 또는 단체 권력집행기구의 10%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10%이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집체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외국투자자란 <외국투자법>상의 외국투자자와 동일하다(제3조).

2. 상업조직이 통제된 기준

일반 상업조직의 경우, ① 통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조직 등록 자본의 50%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② 통제인이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따라 상업조직의 결정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③ 통제인이 상업조직의 단일 권력집행기구 또는 단체 권

в) 러시아연방 연방시의 고정 전화서비스시장 활동
38) 무기와 군사장비에 필요한 특수한 금속과 합금의 생산과 제조에 종사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활동
39) 연방급의 광구에서의 광산 연구와 탐사 및 개발 활동
40) 수생물자원의 채굴활동
41) 1개월 내에 2억 페이지 이상의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종사하는 인쇄활동
42) 매회 100만부 이상 구독물의 편집부와(또는) 출판사가 종사하는 활동

력집행기구의 50%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50%이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집체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④ 통제인이 상업조직의 관리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⑤ 비록 통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조직 등록 자본은 50% 이하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학하고 있지만 기타 주주와의 관계를 통하여 상업조직의 결정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상업조직이 통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전략적 의의가 있는 연방 광산지에서 지질광산자원연구,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상업조직의 경우, ① 통제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조직 등록자본의 10%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② 통제인이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따라 상업조직의 결정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③ 통제인이 상업조직의 단일 권력집행기구 또는 단체 권력집행기구의 10%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10%이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집체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통제인이 상업조직의 관리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업조직이 통제된 것으로 인정한다(제5조).

3. 거래의 사전허가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상업조직을 통제하는 거래를 하려면 상업조직절차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초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을 확정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거래를 완성해야 한다. 만약에 상업조직의 등록자본 중 일정한 액수의 투표할 수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거래할 때에는 확정받은 기간 동안 한차례 또는 수차례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거래 전에 이미 상업조직의 50%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상업조직의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조직과 관련된 거래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4조).

4.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다음의 거래를 진행할 때 사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조직 등록 자본의 50%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거나 상업조직의 단일 권력집행기구 또는 단체 권력집행기구의 50%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50%이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집체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일반적인 거래를 통하여 그 결과가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에 귀속되는 거래, ②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방 광산지에서 지질광산자원연구,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상업조직 등록자본의 10%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거나 상업조직의 단일 권력집행기구 또는 단체 권력집행기구의 10%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10%이상의 이사회(감사회) 또는 기타 집체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연방 광산지에서 지질광산자원연구,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상업조직의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그 결과가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에 귀속되는 거래, ③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조직 등록자본의 10%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가 그 상업조직 주식을 획득하는 거래, ④ 외국투자자가 상업기구의 단체 또는 개인 기업가로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관리기구에 들어가는 계약, ⑤ 외국, 국제조직 또는 그가 통제하는 조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 등록자본의 25%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 그 조직관리기구의 결정의 통과를 저애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방 광산지에서 지질광산자원연구,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상업조직 등록자본의 5% 이상의 투표 가능한 주식을 장악하게 하는 거래, ⑥ 외국투자자 또는 단체에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는 거래 등이다(제7조).

5. 사전허가 절차

사전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투자자 및 단체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관련 기관에 거래사전허가신청서와 통제사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사전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신청인의 국가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인인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법인조직인 신청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신청인의 성립서류, 계약초안 또는 기타 거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합의서, 신청인이 신청전 2년 동안의 경영분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활동기간이 2년 이내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서류, 외국에서 진행된 거래는 제외), 신청인이 참가한 단체의 구성원 정보·전략적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그 상업조직이 전략적 의의가 있는 활동영역의 참가와 관련된 합의 또는 조정행위를 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 신청인을 통제하고 있는 기구 및 신청인이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상업조직이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려는 상업계획 초안, 신청인 소유의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등록자본의 주식 및 신청시 또는 거래 완성 후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을 통제한 이후의 상황 등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통제사전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신청인의 국가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인인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법인조직인 신청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신청인의 성립서류, 신청인이 신청전 2년 동안의 경영분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활동기간이 2년 이내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서류, 외국에서 진행된 거래는 제외), 신청인이 참가한 단체의 구성원 정보・전략적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그 상업조직이 전략적 의의가 있는 활동영역의 참가와 관련된 합의 또는 조정행위를 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 신청인을 통제하고 있는 기구 및 신청인이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소유의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의 등록자본의 주식 및 신청시 또는 거래 완성 후 전략적 의의가 있는 상업조직을 통제한 이후의 상황 등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관련 기관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그 신청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심사한다(제9조). 심사를 거쳐 관련 기관에서는 거래 또는 통제를 허가하거나 거래 또는 통제를 허가하고 신청인과 상응한 의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거래 또는 통제를 부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제11조).

거래 또는 통제를 허가하는 결정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확정하고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 또는 통제의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을 얻은 후 관련 기구에서 결정을 내린 후 3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 기구 또는 위원회에서 신청을 등록한 날로부터 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상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연방 최고중재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1조).[56]

56) 2014년 8월 연방헌법 개정을 위한 연방 법률 의하여 연방 최고중재법원은 폐지

제 4 절 지하자원법의 주요내용

러시아 자원개발법제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를 원하는 외국투자자나 자국투자자들이 본 규정에 기초하여 자원개발을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생산물분배협정법이나 러시아 광산법, 환경법, 지역개발법, 토지법, 수목법, 수자원관리법 등 많은 부분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자원개발사업에의 참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들을 충분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이 불필요하다. 특히 각종 세제와 관련된 러시아 세법은 투자나 개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제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진행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진행해야 할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몇몇 업체가 현재 러시아 자원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요컨대 러시아 자원개발은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국가간의 협약으로 일정한 지역 전체의 개발권을 가져오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보호아래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자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 개발의 원칙을 정해 놓은 것으로 자원개발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지하자원법은 1992년 2월 21일 공표되었고 수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구성은 제I장 총칙, 제2장 지하자

되고 그 권한과 기능이 모두 연방 최고법원에 이관되었으므로, 이 경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현재로는 연방 최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의 이용, 제3장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 제4장 지하자원 이용의 국가적 통제 및 조정, 제5장 지하자원 이용 및 납부, 제6장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지하자원이용 관련 분쟁의 해결 등 총 6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개발의 원칙을 세워놓은 최상위법이다. 즉 개발의 원칙 관련규정, 자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원개발을 원할 경우 당해 사업에 맞게 범위를 축소하여 그 특정한 분야의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1. 목 적

연방 법률은 지하자원법은 러시아연방 및 그 부속 대륙붕내의 지하자원[57]의 지질학적 연구 및 그 이용과 보존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광산업 생산물의 가공 및 잔존물의 이용, 이탄, 사프로필(호수나 늪의 저층에 축적된 동식물의 가연성 잔존물), 기타 지하수 및 호수 등을 포함한 광물질의 생산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규율한다. 이 법은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자원의 보존 및 러시아의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원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총 칙

총칙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에 그 기초를 두며 러시아연방의 제반 법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 영토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관련

57) 러시아 지하자원법상 지하자원이라 함은 지표하층부 전체를 의미하며, 저수지의 수면아래의 지하, 폭포수 아래의 지면 하층 등 지질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지역 전체를 말한다.

규칙과 국제법상 대륙붕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특히 연방구성주체들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어떠한 법령도 이 법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어떠한 법령도 이 법의 규정에 반하면 이 법이 우선한다(제1조).

기타 다른 목적의 경제활동, 예컨대 토지의 사용, 수목의 이용, 동물자원의 이용, 공기의 이용 등과 상충될 경우 연방법률 및 연방구성주체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2008년 7월 개정). 특히 방사능이나 독극물의 오염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러시아연방의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외국인(법인 또는 자연인)의 지하자원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해 규율됨을 원칙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관련 연방법률 및 명령 등에 의해서도 규율된다. 특히 자원개발 및 그 분배에 관하여는 러시아연방 생산물분배협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하자원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따라서 그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이용의 허가는 연방 및 지방 정부에 그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지하자원은 매매, 증여, 상속, 담보, 저당, 기타 재산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하자원의 개발권은 연방이나 지방 혹은 개인의 명의가 가능하다(제1조).

또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연방 자원펀드구성에 대해 규정하고(제2조), 연방정부의 기관이 갖는 권한에 대하여는 그 권한은 ① 개발권, ② 연방 정책의 확정 및 그 실행, ③ 자원이용의 기본원칙의 제정, ④ 단일화된 지질학 정보 및 펀드의 조성방식 등 원칙의 확정, ⑤ 매장량 및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국가적 정보시스템의 구축, ⑥ 자원개발 참여자에 대한 공시, ⑦ 국가적 차원의 매장량 발란스의 작성, 지질학적 연구의 발표, 자원지도의 작성 등의 행위, ⑧ 대륙붕 자원의 관리, ⑨ 자연보호와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자원이용의 규제 등 모두 21개 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또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연방구성주체의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① 지방정부 법령의 정비 및 제정, ② 국가프로젝트에의 참여, ③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④) 지방정부의 펀드조성 등 15개 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3. 지하자원의 이용

지하자원 개발에 관련한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하자원 이용의 종류, 지하자원 이용자, 지하자원 이용의 제한, 지하자원 이용자의 편이. 지하자원 이용자의 이용기간, 지하자원 이용을 위한 허가증의 발급, 이러한 라이센스의 구성, 자원개발의 공매, 자원개발 공매시 참여자의 자격 미달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한 참여의 거절, 국가허가서 발급 전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15조).

러시아가 지하자원의 개발에 허가제를 채택한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해 등의 보호, 그리고 독과점 방지와 시장경제의 활성화, 투자자의 안정성보장 등을 위해서이다.

이 허가서의 발급기관으로는 우선 연방기관으로 국가자원펀드관리국과 그 공화국 지사가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에의 공매신청, 자원개발 참여자의 선별 및 목록작성, 허가서의 최종발급, 자원이용에 관한 조건과 지질학적 연구, 각 광구별 특성 연구, 개발의 방향 확정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 연방구성주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이 직접 관할하는 광구에 대한 허가서 발급, 지방이 직접 관할하는 광구에 대한 이용여건의 준비, 연방기관(국가자원펀드 관리국과 그 공화국 지사)에의 개발이나 공매 등의 요청, 지방이 직접 관할하는 광구에 대한 자원개발 참여자의 선별 및 목록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허가서의 작성 및 발급의 최종권한은 연방기관(국가자원펀드관리국과 그 지방공화국 지사)

에 있다. 그 외에도 자원개발의 신청서의 심사 및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자원개발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법인형태의 변경,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참여자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법인의 재설립, 법인 활동의 정지, 연방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의 법인이 당해 법인의 행위 중 일부를 수행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개발권은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법인의 재설립에 의한 자원개발권의 이전 시에는 연방 법률 파산법이 준용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허가서가 이전되면 허가서 자체의 법인관련 내용도 모두 변경이 되어야 한다. 만일 법인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원개발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금지조항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연방에 속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7조).

경제성이 있는 자원 및 그 가치가 인정된 자원에 대한 연구 목적이나 매장량 측정, 개발평가서 작성, 지질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광구는 상기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법률이나 기타 조례,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제18조).

경제성이 있는 자원 및 그 가치가 인정된 자원의 광구의 소유자, 임차권자, 지상권자의 채굴에 관련하여 이들은 폭발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 깊이 5m를 넘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채굴을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이용권자는 가치있는 자원의 연구 및 채굴을 실행함에 있어서 허가서가 필요하다(제19조).

지하자원이용권은 허가서 시효의 만료, 허가서취득자의 자원이용 포기, 지하자원이용을 금하는 법령의 제정 등 일정한 조건의 발생, 이 법률 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인의 재설립, 연방 양해협약법에 규정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박탈된다. 또 지하자원이용권은 자원개발현장의 안전문제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있는

경우, 발급받은 허가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하자원 이용을 위한 기본규칙을 위반한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하자원이용 만료기간 내에 이용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허가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파산한 경우, 허가서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자원개발법의 규정에 맞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하자원이용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하자원이용권의 박탈, 정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20조). 또 지하자원이용권은 시효의 만료에 의해서도 정지될 수 있다(제21조).

지하자원이용권자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는데(제22조), 먼저 자원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허가서에 의해 제공된 광구의 이용권 및 생산물분배협정법에 의한 권리
-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채굴, 연구 등)의 선택
- 허가서 및 생산물분배협정법에 의한 자신의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의 이용
- 자신의 활동으로 취득한 부산물의 이용
- 경계설정권
- 허가서 및 생산물분배협정법에 의한 자신의 비용에 의한 지질학적 연구 및 경계의 연구
- 기 발급된 허가서의 의무사항의 변경 시 국가기관에의 청원권

그리고 지하자원이용권자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자원이용관련 제반 법규정의 준수의무
- 광산시설의 활용 및 채굴에 요구되는 제반 기술적 규정의 준수의무
- 자원이용 과정상 지질학적 연구, 측량 등의 문서작성의무

-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의 지질학적 정보의 제공
-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의 자원의 종류 및 매장량, 경제성, 채굴시의 유의사항 등의 정보의 제공
- 자원이용시 안전성 확보
- 자원, 공기, 수자원, 수목 의 보존을 위한 제반 원칙과 규정의 준수
- 자원개발시 발생한 환경의 복원
- 광산개발시 사용한 지하수 및 기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 허가서 및 생산물분배협정법에 의한 납부의무
- 국가적 기밀의 유지의무

4.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 제반 규정의 준수
- 종합적인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한 지질학 연구의 보장
- 자원의 종류 및 매장량, 경제성, 지질학적 연구의 실시
- 국가기관의 연구지원
- 매장된 지하자원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활동의 보장
- 자원 매장량과 채굴량을 산정한 정확한 보고
- 홍수, 화재,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자원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들로부터 광구의 보호
- 오염물의 제거
- 경제성있는 광물채굴에 관한 기업에 관련된 규정의 준수
- 경계의 설정 및 설정된 경계의 준수

- 광산개발 시 발생한 잔존물 및 폐기물의 규정에 따른 처리
-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광구의 지질학적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는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질학적인 조사와 경제적 가치의 측정 등은 국가지원펀드가 담당한다. 또한 최초로 채굴한 광물의 이용은 지하자원이용권자는 채굴된 광물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채굴시의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광업청과 지하자원이용권자는 안전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광업청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의 대표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안전의 확보를 위해 작업자의 교육, 장비운용의 원칙, 특수작업자를 위한 복장의 준비, 폭약사용의 전문가 육성 및 안전교육,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4조).

지하자원채굴을 위한 시설물의 조건에 대하여는 이러한 시설물은 국가자원펀드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공화국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은 비용의 보전없이 철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건축시 연방 세법의 기준에 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또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필요한 토지, 제거해야하는 수목, 수자원 등은 연방 토지법, 수목법, 수자원관리법, 그리고 이 지하자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5조).

자원채굴 관련 기업의 청산이나 그 보호는 허가서의 유효기간의 종료로 결정한다(제26조). 자원의 종류 및 매장량 위치 등을 국가광산대

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제30조). 또 부존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부존자원의 국가밸런스에 관한 규정도 있다(제31조). 국가는 부존자원의 대장을 작성하는데, 그 기록 주체는 연방지하자원펀드이다. 이 기관은 지하자원법에 맞게 부존자원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32조).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나 학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광구는 규정에 따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기념지역으로 공표를 하여 보존한다(제33조). 이러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발견 혹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국가자원개발 펀드가 진행한다.(제34조)

5. 지하자원 이용의 국가적 통제 및 조정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정의 가장 큰 목적은 광물자원의 원활한 개발과 합리적 이용, 부존자원의 관리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의 통제와 조정의 형태는 관리, 허가서제도, 세제를 통한 관리, 지속적인 감독이다(제35조).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의 관리의 주체는 연방대통령, 총리 및 각부 장관, 각 주정부의 수반, 연방자원개발펀드, 국가광산청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질학 연구는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질학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은 연방자원개발펀드가 실행한다. 자원의 상태에 대한 국가적 감시는 환경감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 작업도 연방자원개발펀드가 담당한다(제36조).

지질학적 연구와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해 자원이용권자의 러시아연방 법규의 위반, 계약위반, 국제협약의 위반 등에 대해 국가적 경고 및 적발, 위반 억제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제37조).

국가광산청은 자원이용자의 법규위반을 감시하고, 위반 시 경고, 적발, 위반억제등 의 조치를 취한다(제38조).

6. 지하자원 이용 및 납부

지하자원법에 의한 지하자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일회성 세금과 자원이용에 대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공매 참여를 위한 인지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연방 세법에 의해 자원이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지하자원이용 관련 분쟁의 해결

지하자원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제49조). 그리고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국가기관에의 청원, 소송, 조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제50조). 그리고 만약 지하자원법의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 배상액의 납부절차 등을 러시아연방정부가 결정한다. 그리고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과 국제계약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계약을 우선한다.

제 5 절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 총 칙

러시아에서 민사소송은 러시아연방 일반관할법원에서 관할한다. 이 일반관할법원에서의 민사소송절차는 연방헌법,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성 법률>, 민사소송법전(Гражданский процессуаль

ный кодекс) 및 기타 연방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치안판사(мировой судья)에 의한 민사소송절차는 <러시아연방의 치안판사에 관한 연방법률>로 정한다.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이 러시아연방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조).

민사소송법전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판결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집행될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상의 요구를 포함하여 침해당한 권리의 보호에 관한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포기는 무효이다. 연방 법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않는 이상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법원에 호소될 수 있다(제3조).

또 법원은 자신의 권리, 자유 및 법적 이해관계의 보유자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청구에 따라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전과 기타 연방 법률 정하는 경우 타인이나 타인의 부정확한 집단 또는 러시아연방, 그 구성주체, 자치단체의 권리, 자유 및 법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한 청구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제4조).

러시아연방은 다민족국가이며,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연방 구성주체인 공화국에게 독자적인 헌법이나 헌규를 가지는 외에 러시아연방의 국어인 러시아어가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공용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민사소송절차도 러시아연방의 국어인 러시아어 또는 해당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공화국의 공용어로 진행된다. 군사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이 러시아어로 진행된다. 한편 소송당사자로서 그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가 설명, 결론, 주장, 청구 또는 신청을 자신의 모국어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언어로 할 권리 및 통역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부여되고 보장된다(제9조).

또 법원은 명령, 판결, 결정, 제3심법원 간부회의 명령 등의 형식으로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я)을 내린다. 유효한 법원의 결정(постановления) 및 법원의 합법적 지시(распоряжения), 요구(требования), 지령(поручения), 소환(вызовы)과 요청(обращения)은 예외 없이 러시아연방 영토 내의 모든 권력기관, 자치기관, 공공단체, 공무원, 국민, 단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이러한 다양한 결정들이 관련자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자는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의 침해에 관한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외국의 법원, 중재법원에 의한 판결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 및 민사소송법전에 따라 이행된다(제13조).

2. 법원의 구성

민사소송은 제1심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제2심법원과 제3심법원에 있어 민사소송은 합의부가 심리한다. 그런데 법이 정한 경우 제1심법원에서도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전이 민사소송을 심리하고 일부 절차적 행위를 할 권리를 단독판사에게 부여한 경우 당해 판사는 법원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치안판사의 판결에 관한 항소소송은 해당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항소절차에 따라 심리한다(제7조).

민사소송법전 제7조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사한다(제14조).

합의부의 심리는 판사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결정한다. 판사는 투표를 거부할 수 없다. 부장판사는 배석판사가 투표한 뒤 투표한다. 과반수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판사는 그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한 반대의견은 사건 자료에 첨부되나,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되지 않는다(제15조).

3. 관 할

기본적으로 일반관할법원은 민사・가정・노동・거주・토지・환경 등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민, 단체, 정권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침해당한 권리나 자유 또는 법적 이해관계의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을 관할하고, 그 외에도 (민간)중재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민간)중재법원에 의한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소송, 외국 법원과 외국 중재결정에 대한 인정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관할한다. 그리고 일반관할법원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단체, 외국투자를 받은 국내단체, 국제기구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또 일반관할법원은 경제적 분쟁 및 연방 헌법성 법률과 연방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한다(제22조).

한편 러시아에서는 치안판사제도가 있는데, 치안판사는 제1심법원으로서 법원의 명령(채무자로부터의 금전 회수 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명령)의 발급에 관한 소송, 배우자 간의 아동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혼소송, 소송금액이 5만 루블(한화 약 125만원) 미만의 경우 배우자들이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소송, 그리고 친부모부인이나 입양, 친권제한의 소송과 아동 관련 소송, 혼인무효소송을 제외한 가정관계에서 유래되는 소송, 또 재산상속 관련 소송과 지적 활동의 결과물의 제작과 사용 관련 소송을 제외한 소송금액이 5만 루블 미만인 경제적 분쟁에 관한 소송, 재산의 사용절차에 관한

소송, 연방 법률 정한 기타의 소송 등을 관할한다(제23조).

지역법원은 민사소송법전 제23조(치안판사 관할), 제25조(군사법원과 기타 특별법원 관할), 제26조(각 연방구성주체의 법원 관할), 제27조(러시아연방 최고법원 관할)에 명시된 소송을 제외하고 일반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을 제1심으로서 심리한다.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과 자치관구 법원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민사소송, 국민과 사회단체의 권리, 자유와 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정권기관의 법규를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 합리적인 기간 내에 치안판사나 지역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법원명령의 이행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그리고 연방법률 정한 경우에는 기타 소송도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과 자치관구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제26조).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판단, 즉 어떤 소송이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는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에 관한' 연방 법률로 정한다(제27조).

한편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기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기된다(제28조).

원고는 관할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먼저 원고는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거주지가 러시아연방 내에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피고의 러시아연방 내의 최종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또 법인의 지부 또는 대표사무소의 활동에 관한 소송은 그 법인의 지부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비나 양육비의 지불 또는 친부확인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가 속하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미성년자인 아동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문제로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혼소송

은 원고의 거주지가 속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부상 등 기타 건강의 손해 또는 부양자 상실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가 속하는 지역 또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불법입건, 유죄선고, 구속입건, 거주지 변경금지 등의 불법 조치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노동권, 연금권, 거주권의 회복, 재산의 반납 또는 재산가치의 지불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법원, 계약이 체결하거나 이행되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 선박 선원의 체불임금의 회수, 귀환과 사회적 보험에 대한 비용의 보상, 수난 구조에 대한 보수에 관한 소송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법원 또는 선박 등록지가 속하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계약이행 장소가 명시된 계약에서 유래되는 소송은 그러한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가 속하는 지역의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이에 따라 어떤 소송이 여러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법원의선택에 대한 권한은 원고가 가진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기 전에 해당 소송의 속지적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민사소송법전 제26조, 제27조, 제30조가 정한 관할은 변경할 수 없다(제32조). 민사소송법전 제30조는 토지, 부동산, 하층토 관련 소송은 그 소송대상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송의 당사자

소송에 참여자는 자에는 당사자. 제3자, 검사, 권리 및 자유, 기타 법적 이해관계의 보호를 요청하는 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해당 권한을 받은 자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기하는 정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관계에서 유래되는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자가 있다(제34조).

원고는 소송의 원인과 대상을 변경하고, 소송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고, 피고는 소송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화해합의를 하여 소송을 마칠 수 있다. 원고에 의한 소송의 취소, 피고에 의한 소송의 인정 및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가 법에 위배되고 다른 자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의 원인과 대상이 변경되거나 소송 금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심리기간은 해당 소송절차적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제39조).

소송심리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멸한 경우, 예컨대 자연인의 사망, 법인의 작업형태의 변경, 채권의 양도, 채무의 양도 등 채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변경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승계인으로의 대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권리의무의 승계는 소송의 각 단계에서 허용된다. 당사자의 대체 또는 대체의 거절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44조).

5. 소송의 제기

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제131조). 판사는 소장이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제1심법원에서 소송이 개시된다(제133조). 단 판사는 일정한 경우, 예컨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된 소장에 소송의 대상으로서 소장 제출자의 권리, 자유와 법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가 명시된 경우,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대상에 대한 분

쟁에 관한 법원 판결이나 민간중재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에 의한 소송의 취소로 소송 종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합의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장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제134조).

한편 피고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 원고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37조).

6. 청구의 확보

청구의 확보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소송에 참여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판사 또는 법원은 청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확보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법원 결정의 이행을 방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확보는 소송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제139조).

청구의 확보는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는 재산(다른 자에게 있는 피고의 재산 포함)의 압류나 피고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재산을 피고에게 넘겨주거나 피고에 대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분쟁 대상에 대한 다른 자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재산압류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산판매의 중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항의를 법원에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 이행의 중단 등의 방법으로 청구의 확보가 가능하다(제140조).

7. 소송 진행의 준비

소장이 접수된 후 판사는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다른 자에게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소송의 올바른 심리 및 해결을 위한 행위 및 그 행위의 기간을 명시한다.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는 각 민사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이고, 판사, 당사자, 소송에 참여하는 다른 자 및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147조).

8. 법원의 심리

이 민사소송법전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의 경우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치안판사의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심리・해결한다.

복직, 부양비나 양육비의 회수에 관한 소송은 1개월 이내에 심리・해결한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민사소송은 연방법이 정하는 단기기간 내에 심리・해결하여야 한다(제154조).

소송참여자는 심리에 참석하여야 한다. 만약 심리에 불참석한 경우, 그 이유와 그 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참여자 중 심리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되지 않는 자가 불참석한 경우에는 심리는 연기된다. 모든 소송참여자가 심리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참여자의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연기한다.

심리에 불참석한 소송 참여자가 자신의 불참석의 정당한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그 이유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소송의 심리는 해당 소송 참여자 없이 진행된다. 심리 불참석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궐석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피고가 불참석한 경우 법원은 심리를 피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원에 궐석심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제167조).

9.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항소기간인 1개월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의 판단이 파기되지 않으면 그 판단은 제2심법원이 항소를 심사한 후 확정된다. 제2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경우 그 새로운 판결이 바로 확정된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소송의 기타 참여자, 그 대리인은 같은 것을 이유로 같은 대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209조).

10. 법원 판결의 이행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 후 이행되어야 한다(제210조). 그리고 부양비나 양육비의 회수, 3개월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 근로자의 복직, 러시아연방 국민의 유권자 또는 국민투표(referendum) 참가자 명부에의 기재 등의 판결은 그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제211조).

11. 소송 심리의 중단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소송을 중단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먼저 소송을 중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관련 요구를 가진 제3자의 사망, 당사자가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되거나 무능력자로 인정된 자에게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고가 참전하거나, 비상사태 상황이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참전하거나 비상사태 상황이나 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원고의 소송 심리 중단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민사・행정・형사소송이 해결되기 전 해당 소송의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적용하려는 법이 헌법에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러시아연방 헌법법원에 제기한 경우가 해당한다(제215조).

반면 당사자가 입원한 경우, 피고가 수색 중인 경우, 법원이 전문감정의 실시를 명령한 경우, 소송참여자인 법인의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송참여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소송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제216조).

12. 소송 심리의 종료

법원은 해당 소송이 민사소송법전 제134조 1호에 명시된 사유로 민사소송으로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당사자간의 같은 이유로 같은 대상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소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법원에 의한 소송 심리 종료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소하고 법원이 소송 취소를 승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화해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 심리를 종료시킨다(제220조).

13. 항소와 항소심의 심리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확정되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권은 당사자, 소송의 기타 참여자 및 검사가 가진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이 해결된 자도 항소권을 가진다(제320조).

항소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급법원에 제기한 항소는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 발송된다. 항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제321조).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을 심리하는 법원은 구분되는데, 먼저 치안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지역법원이, 또 지역법원, 주둔지 군사법원[58]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과 자치관구 법원 및 군관구(함대) 군사법원이, 그리고 제1심법원으로서 소송을 심리한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과 자치관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는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민사・행정부가, 제1심법원으로서 소송을 심리한 군관구(함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러시아연방 대법원의 군사부가, 제1심 법원으로서 소송을 심리한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항소부가 항소심을 심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구조로 규칙적으로 상소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법원,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 자치관구 법원 및 군관구(함대) 군사법원은 항소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항소를 심리한다.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은 항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리한다. 민사소송법전이나 기타 연방 법률로 일정한 범주의 항소심의 심리기간을 단기로 정할 수 있다(제327조).

항소를 심리한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거나, 제1심법원의 판결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 항소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기각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제1심법원의 판결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기하며 소송을 종료하거나 항소를 전체・부분적으로 기각하거나, 항소가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되었고 그 기간 회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각하한다(제328조).

58) 1대 이상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군사법원이다.

14. 상고심에서의 소송의 진행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소송참여자 및 법원 판결로 침해되는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의하여 상고심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소송참여자 및 판결로 침해되는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모든 호소 방법을 이용한 경우,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상고심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제376조).

15. 감독법원에서의 소송의 진행

민사소송법전 제391조의2 제2호에 명시된,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감독항소(надзорная жалоба)는 소송참여자 및 판결로 인하여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다른 자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간부회(Президиум)에 제기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간부회에 제기될 수 있는 판결은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이 제2심법원으로서 심리한 공화국의 대법원, 지방법원, 연방시 법원, 자치주 법원, 자치관구 법원의 판결,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이 제2심법원으로서 심리한 군관구(함대) 군사법원의 판결, 제2심법원으로서의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제1심법원으로서의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의 판결,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항소부의 결정, 제2심법원으로서의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행정부, 민사부 및 군인부의 결정,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행정부, 민사부 및 군인부의 결정 등이다(제391조의1).

감독항소는 직접 러시아연방 최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민사소송법전 제391조의2에 명시된 판결과 결정에 관한 감독항소는 그 판결과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6 절 중재법원법의 주요내용

1. 총 칙

중재법원법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위치한 중재법원의 조직과 활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 법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재심리의 당사자는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 분쟁을 중재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국제상사중재는 중재법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협약이 중재법원법과 달리 중재법원의 조직과 활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조).

중재법원법에서 중재법원이란 상설 중재법원 또는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재법원을 말한다. 또 중재법관이란 중재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연인을 말한다. 중재심리란 중재법원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중재계약이란 분쟁이 중재법원에 의하여 해결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또 중재심리의 당사자란 법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사업가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업가, 이해관계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소송의 피고가 된 자연인, 권한있는 법원이란 중재재판법률 또는 민사소송법률이 정한 관할에 따라 국가중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을 심사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중재법원, 일반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을 심사하는 지역법원(рай онный суд)을 말한다(제2조).

2. 중재법원의 설립

러시아연방에서는 상설 중재법원과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법원이 설립될 수 있다. 상설 중재법원은 상공회의소, <조직화된

거래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оргах»)>에 따라 활동하는 거래조직자(организаторы торговли), 사업가와 소비자의 공공연맹,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법인인 단체(기업)에 의해 설립되며, 그 법인인 단체(기업)에 소속되어 운영된다. 연방 정권기관이나 러시아연방 구성주체(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의 정권기관 및 자치단체의 정권기관에 소속된 상설 중재법원은 설립될 수 없다.

상설 중재법원은 법인이 먼저 법인이 상설 중재법원의 설립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상설 중재법원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 의무적·권고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중재법관 명단을 승인한 경우에 그 설립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설 중재법원을 설립한 법인은 그 법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권한 있는 법원에 상설 중재법원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법원의 설립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당사자의 합의서에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법원의 설립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법원법 제8~14조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3. 중재법원에의 분쟁제기

분쟁은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이 체결되어야 중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중재계약은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 또는 구체적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분쟁에 대하여 체결될 수 있다. 상대방이 가입하는 방식으로만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종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중재계약서는 소송제기 사유가 발생한 후 체결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일반관할법원 또는 중재법

원에서 심리 중인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은 권한있는 법원이 그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체결될 수 있다. 계약에 조정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은 중재법원의 해결대상이 될 수 없다(제5조).

4. 중재법원의 구성

중재법관의 자격요건으로는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들로부터 독립하고 중재법관의 업무를 맡는 것에 동의한 자로서 분쟁해결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이 선출 또는 임명된다.

1인이 단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의 중재법관은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다수인에 의한 회의제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의 중재법관은 그 회의 의장이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제8조).

5. 중재심리

중재법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일방의 당사자가 중재계약이 없거나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중재심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법원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또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에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중재법원은 그 권한을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 분쟁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분쟁을 심리하지 못한다(제17조).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이 분쟁을 심사하는 장소를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장소는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를 고려하여 중재법원이 정한다. 상설 중재법원의 경우에는 심리장소는 그 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

당사자 사이에 중재심리에서 사용될 언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심리는 러시아어로 진행된다. 중재심리에 정해진 언어가 아닌 언어로 된 서류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 서류와 자료를 번역하여야 한다(제21조).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분쟁대상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는 임시적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제25조).

당사자가 심리에 불참석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서류 등 기타 자료의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참석 또는 서류 등 자료의 미제출은 중재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가 중재심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8조).

6. 중재법원의 결정

중재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중재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제31조).

사건을 심리한 후 중재법원의 결정은 중재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중재법원은 심리에서 결정을 선고한다(결론부분만 선고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결정문의 발송일이 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은 결정의 결론부분을 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당사자의 화해합의의 승인에 대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해합의가 위법하지 않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며 중재법원은 그 화해합의를 승인한다. 화해합의의 내용은 중재법원의 결정의 결론부분에서 선고된다. 중재법원의 결정은 중재법원을 구성하는 중재법관이 이에 서명을 한 경우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제32조).

7. 중재법원 결정에 관한 항고

중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중재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중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결정을 파기하여 달라는 청구를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40조).

중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재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제42조).

① 중재법원 결정의 파기청구를 제기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중재계약서가 중재법원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 정한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
- 중재법원이 중재계약서에 언급되지 않거나 그 요건에 맞지 않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또는 중재법원 결정이 중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 중재법원의 구성 또는 중재심리가 중재법원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
-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법관의 선출(임명) 또는 중재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의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중재법원에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것

② 권한있는 법원이 아래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우:

- 해당 분쟁이 연방 법률 따라 중재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 중재법원의 결정이 러시아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권한 있는 법원이 중재법원의 결정을 파기한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계약서에 의해 중재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계약서의

효력이 없거나 중재법원이 중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쟁에 대한 결정을 했거나 중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중재법원의 결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기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제43조).

8. 중재법원 결정의 이행

중재법원의 결정은 결정에 명시된 기간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행된다. 중재법원 결정에 이행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44조).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법원의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 결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중재법원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법원이 발급한 강제집행명령서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은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권한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신청은 중재법원 결정의 자발적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권한있는 법원은 당사자가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신청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강제집행명령서 발급신청은 각하한다. 권한있는 법원은 당사자가 명시된 기간을 놓쳤다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신청기간을 회복시킬 수 있다(제45조).

권한 있는 법원이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법원은 중재법원이 이미 확인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중재법원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재심사하여서는 안 된다. 권한 있는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강제집행명령서의 발급신청을 각하한다.

①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권한 있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증명을 제출한 경우:

- 중재계약서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중재계약서가 무효라는 것
- 중재법원이 중재계약서에 언급되지 않거나 그 요건에 맞지 않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또는 중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 중재법원의 구성 또는 중재심리가 중재법원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
-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법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법관의 선출(임명) 또는 중재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사전의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중재법원에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것

② 권한 있는 법원이 아래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우:

- 해당 분쟁이 연방 법률 따라 중재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 중재법원의 결정이 러시아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러시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와 법이론과 러시아 법원의 유형, 그 연원간의 위계절서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되는 실체법적인 주요법률과 절차법적인 주요법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러시아 법학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와 법이론에 비추어 국가현상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본질을 연구함에 있어 관련 사회과학 각 분야의 특징과 구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법제정에 대한 작용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법 연원의 체계적 발전을 조사함으로서 러시아 법학에서 국가와 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가와 법이론이라는 독특한 학문적 전통이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시하다시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이후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과 WTO 가입의 가입으로 인해 각종 국내 법률과 제도는 국제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국제조약의 효력을 국내법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종 법률과 제도들 역시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의 경우 소련의 개방이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외국투자로부터 자본 및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국경 내에서 외국투자자의 활동의 자유 보호, 투자방식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양도 보호, 국유화 및 수용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손해배상 보호, 러시아연방 법률의 변화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받도록 보호, 투자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재법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입, 이윤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의 사용 및 송금을 보호하고, 국내로 반입한 정보를 아무런 제한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권리, 러시아 상업조직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과 국가유가증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임대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

경제특구법은 러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 특수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러시아연방정부에서 정부명령의 결정의 형식으로 내려진다. 자유구역의 관세제도가 경제특구법의 중요한 특성인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경제적 제재와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연방 외국자본의 진입에 국방과 국가안전에 전략적 의의를 둔 상업조직 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적 상업조직과 전략적 의의가 있는 연방 광산지에서의 상업조직을 나누어 상업조직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제한을 두어 통제하였는데 이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자원개발법제의 경우 자원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지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자원의 보존 및 러시아의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원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하자원 개발에 관련한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하자원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지하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국가기관에의 청원, 소송, 조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과 국제계약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계약이 우선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법, 경제특구법, 상업절차조직법 및 지하자원법 등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국내·외적인 노력으로 인한 법제분야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의 그러한 법제에 대한 이해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대륙법계에 속하기는 하나 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 등으로 인하여 독특한 요소가 많은 러시아 법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연구 역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식의 이해체계에 맞게 적절하게 정리 설명한 연구업적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출간된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귀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저작물들도 특정 분야의 러시아 법령을 번역한 것이거나 그에 약간의 기초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 러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법학적, 또는 법정책적 연구동향의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것은 아직 벅찬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보고서가 러시아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대 러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절차들은 명확하고 해결함에 있어 이해에 조그만 기여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명순구-이제우, 러시아법입문, (민들레: 서울), 2009.

예르쇼바-아트뉴코바 저, 채희석 역, 러시아기업법, (서울: 법문사), 2013.

И. А. Исаев,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России, (Юрист: Москва), 1994.

ЮРИНФОРМЦЕНТР, ЮРИД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ЮРИНФОРМЦЕНТР), 1995.

А. В. Вишнякова et als,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для населения, (Москва: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втура), 1988.

П. Н. Бирю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Москва: ЮРАЙТ), 2012.

А. Я. СУХАРЕВ, ЮРИД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3.08.1997 №. 100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одготовки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О. Е. Кутафина, ОСНОВН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Москва: ЮРИСТ), 1995.

С. А. КОМАРОВ, ОБЩАЯ 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В СХЕМАХ И ОПРЕДЕЛЕНИЯХ, (Москва: Манускрипт), 1996.

М. Н. Марченко, Те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Москва: Зерцало), 2011.

http://council.gov.ru

http://www.rosvlast.ru

http://www.duma.gov.ru

http://pravo.gov.ru

http://www.ksrf.ru

http://www.vsrf.ru

http://www.arbitr.ru

http://www.iuaj.net

http://pred-pravo.ru

http://constitution.kremlin.ru

http://demoscope.ru

ttps://ru.wikipedia.org

http://www.kodeksrf.net